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02) 522-7284 **fax** (02) 522-7285
homepage www.minbyun.org **blog** http://minbyun.org/blog/
e-mail info@minbyu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9 3·4 Vol.8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9 3·4 Vol. 81

초점 짓밟힌 철거민의 인권과 효율성
사법 제대로 보기 미네르바 사건과 사법의 후진성
특별연재 "한국의 선진례를 참고하자"
시론 적(敵)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민변의 활동 월례회 정관용, 소통의 문제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9/03/04/VOL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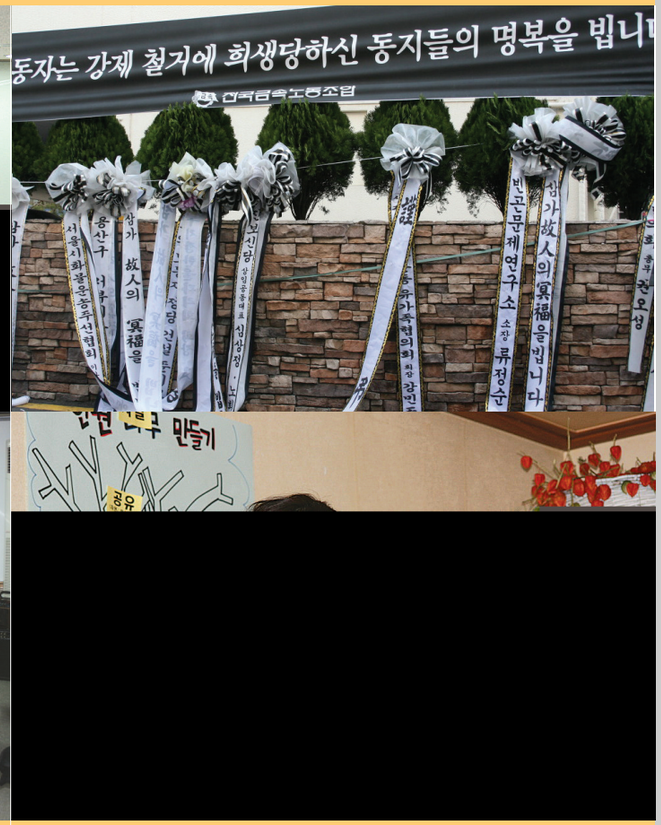

발행일 2009년 4월 3일
발행인 백승헌
편집인 황희석
편집위원회 김도형·김영준·김진·정은경·좌세준·채영호·이경은·황혜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이메일 info@minbyun.org
값 5,000원
디자인·편집·인쇄 디자인랩(02-739-9957)

CONTENTS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2

초점 용산 참사
'용산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6
'짓밟힌 철거민의 인권과 효율성' _정리 : 이경은 18

사법 제대로 보기 미네르바 사건과 사법의 후진성 _김갑배 28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 _김기창 40
긴급토론회 지상중계 – '수렁'에 빠진 사법부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
_정리 : 김현기 · 황혜정 43

법률 바로세우기 노동관계법 & 집시법 _민변 입법감시TF 50

시론 적(敵)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_박경신 58

법률창고 농민시위 국가배상 판결문 68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81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일반 시민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85

특별연재 "한국의 선진례를 참고하자" _한인섭 88

민변의 활동 소통의 문제,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 정관용, 3월 민변월례회 _정리 : 김영준 92
공부모임 :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_정리 : 좌세준 104

회원이야기 돌아온 탕아? _조광희 112
민변 새내기, 인사드립니다 _조현주 115

행사후기 실천하는 지식인 공동체 '민변'과의 첫 만남 _황혜정, 박성민 116

인턴 이야기 '88만원 세대'가 민변을 선택한 이유 _박성민 118

정기구독안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변론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초점의 삽화는 김현경님과 사법제대로보기의 삽화는 유수연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글 _**박주현** 회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요즘은 사는 게 정신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을 저질러 놓기 때문에 그 뒤만 치우려고 해도 24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다가 지치면 나가떨어지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내 자식인데 내 업보인데 어쩔 것인가 하며 인내하는 부모의 심정이 되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절이 된 듯하다. 그래도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으려니, 죽으라는 법은 없으려니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진보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진보의 미래는 하꼬방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온 나로서는 요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진보진영에서 작은 발걸음이나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우리나라 보수는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상품을 갖고 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개발정책으로 당장의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상품, 기업이 잘되어야 경제가 잘되는데 기업은 보수편이니 보수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상품, 진보는 말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서 보수는 이해관계만 맞으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므로 추진력이 있다는 상품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상품들에는 하자가 있다. 우선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개발정책은 '자산경제의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있고 그 대가를 치른다.'는 하자를 갖고 있다. 세계발 금융위기가

바로 실물경제보다 지나치게 커버린 자산경제의 거품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한 맹목적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기업 정책은 내수가 중요해진 지금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가 5,000만에 가까운 나라의 경제가 수출만으로 부흥할 수는 결코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앞으로 떨어질지언정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하고, 소비가 늘려면 소득재분배정책밖에 방법이 없다. 모기지 신용카드 재정적자 등으로 미래소비를 끌어다 쓰는 건 파산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이다. 소득재분배를 하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이익이나 배당보다는 임금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하고,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R&D(연구개발)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HRD(인적자원개발)을 중요시하고, 대기업의 이윤을 높여주는 SOC보다는 저소득층 중산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생활비를 줄여주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친기업 정책과 재정 그것도 친재벌 정책과 재정으로는 결코 경제를 책임질 수 없다.

이해관계만 맞으면 일사분란하다는 것 또한 하자가 있다.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부류치고 부패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교도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다. 우리나라 보수는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마저 없는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부패의 거나한 한 판 잔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투명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꽃인 경쟁은 결코 꽃피울 수가 없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투명성과 신뢰에의 의존도는 급속도로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보수는 경제를 책임질 만한 역량이 없다.

실력이 없으니 각종 꼼수가 등장한다. 시장에 가서 목도리를 둘러주는 쇼쇼쇼를 버전을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반복할 테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예산 일부를 앞세워 민생일자리추경이라고 선전하고는 훨씬 많은 대기업 부자예산을 배치할 터이다. 꼼수가 탄로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해야 할 테고, 비판에 재갈을

우리나라의 복지는 전 국민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사회보험은 가장 필요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는 소외되고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소위 '복지동맹'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물려야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과 권력을 공유해야만 한다.

보수는 추진력이 좋으니, 이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에 환호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꼼수 질에 그대로 말려들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경제는 아작 나거나 속으로 골병이 들고야 말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도.

진보가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매력적인 상품을 가져야 한다. 뉴타운 같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진보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부자들에게 20조 감세하는 대신 매년 연봉 2,000만원의 공공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과잉경쟁을 해소하겠다.' '4대강 사업에 4년간 15조를 퍼붓는 대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중산층까지(5분위까지) 무상화해서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매월 20만원씩 올리겠다.' 와 같이 교육비에 신음하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두려워하는 평범한 가정들에게 솔깃한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는 전 국민의 5%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사회보험은 가장 필요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는 소외되고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소위 '복지동맹'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지난 몇 년간 늘어난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정책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 복지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0분위 중 5~6분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

현재 보육료에 대해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도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사실 고등학교는 지금 바로 전체무상으로 해도 될 경제수준이지만,
아직 사회정책예산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며, 미래투자와 관련이 깊은 교육복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분위는 재산비중이 높고 비공식부문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단순히 소득만을 근거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5:5, 지역가입자는 7:3 정도로 하여 새로운 분위 산정기준을 확립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보육료에 대해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도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사실 고등학교는 지금 바로 전체무상으로 해도 될 경제수준이지만, 아직 사회정책예산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학은 300개 중 100개 정도를 직업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산업대학으로 만들어서 등록금을 무상 혹은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 현재 2,00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만개로 늘리고 그곳에 오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학습지원 문화지원 심리지원을 해주는 사회서비스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미래투자와 관련이 깊은 교육복지의 내용이 될 것이다.

6분위까지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교육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를 진보세력에 대해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비로소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동반성장하는 경제사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신영복 선생이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는 입장을 일치시키는 관계라 했는데, 가장 탄탄한 관계는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관계일 것이다.

‘용산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글 _**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정리 : 민병덕 회원)

1. 용산4구역의 개괄적인 상황 등

이번 용산 참사가 발생한 소위 용산4구역의 정식명칭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1] 구역으로 신용산역이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을 뿐 아니라 용산역도 가까우며, 특히 국제빌딩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의 영업이 활발한 곳으로 상권이 발달한 곳이었다.

이곳은 주변의 용산2, 3 구역과 더불어 이른바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에 해당하는 곳이며, 최근의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으로 3.3㎡당 예상 분양가가 3,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 구역이다.

또 용산4구역 개발은 삼성물산 건설부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3개의 시공사들이 각각 40%, 3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지하 7층, 지상 40층의 6개동(아파트 3개동, 오피스 3개동)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개발 전에는 주거세입자 464명, 상가 세입자 439명이 각각 거주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인데, 통상의 주택재개발지역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2]을 보면 용산4구역의 상권이 그만큼 발달한 곳임을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용산4구역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문제보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2009. 1. 19.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 대부분은 상가 세입자들이며, 이들의 요구사항들도 개발 이후에도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 상가세입자 입주시기의 문제

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가세입자들 23명을 기준으로 볼 때, 입주시기의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영업개시시기	세입자수	비 고
1990년 이전	4명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	7명	
2000년 이후 2003. 12. 1. 이전	4명	
2003. 12. 1. 이후 2006. 4. 20. 이전	5명	
2006. 4. 20. 이후	3명	

위 [표]를 보면 주민공람공고일 2003. 12. 1.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사람이 15명이고,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구역결정고시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사람이 5명, 구역결정고시일 2006. 4. 20. 이후에 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3명이다.

이에 대하여 상가재개발의 경우 계획이 발표된 이후 들어와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들의 사정을 모두 봐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서 용산 제4구역의 경우에도 2003. 12. 1. 공람 공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체 상가세입자 26명 중 20명이라며 용산 세입자들 대부분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온 사람들로 막판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투쟁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먼저 위 표에서 보듯이 용산 세입자들 대부분이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지적은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A씨의 경우는 20년 넘게 식당을 했던 사람이다.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1986. 5. 23. 갈비집을 개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1993. 2. 8. 주점으로 업종 변경하였다[3]. 그런데 사업장 소재 건물이 2004. 4. 17.

1) 도정법 제2조 제2호 라목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심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상가 세입자 중에는 주거 세입자를 겸한 경우도 다수 있다.
3) 이는 2009. 2. 13.자 용산세무서장이 발급한 갈비집 폐업사실증명원과 주점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된다.

A씨의 경우는 20년 넘게 식당을 했던 사람이다.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1986. 5. 23. 갈비집을 개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1993. 2. 8. 주점으로 업종 변경하였다. 그런데 사업장 소재 건물이 2004. 4. 17.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면서 2004. 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썼던 것이다.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면서 2004. 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썼던 것이다. 그러면서 2004. 8. 위 임대를 변경하는 계약서에서 '철거시에는 임차인은 이유 없이 비워준다' 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2006. 재계약을 하면서 또다시 '임차인은 기간 중이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철거가 필요할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준다. 건물수리는 임차인이 하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는 특약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2004.에 비로소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쓴 것일 뿐이다. A씨를 두고 2004.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재개발할 때는 명도한다는 특약까지 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지적하는 것은 현재 임차인에 대한 자료를 조합으로부터만 취득하고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확인하지 않은 결과이다. 거꾸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히려 2004. 4.에 건물주가 왜 바뀌었느냐 하는 점이다.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임대해줄 계획으로 그냥 산 것이라면 개발이 될 지역에서 임대수입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개발이 되는 줄 개발 이익을 노리고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용산지역에서 모든 건물을 조사한 바는 없으나 재개발 지역에서 위와 같은 개발호재를 타고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세입자들은 새로운 건물주와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개발로 인한 철거시에는 명도한다는 건물주의 요구를 특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특약을 하고도 우선 입주권이나 대체상가 등의 '동일 상권 계속 영업' 을 주장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람공고로 기존 세입자들이나 새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재개발의 확정을 인식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지역에 새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주민공람은 도정법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과 도정법 제4조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이 있고, 용산에서는 2003. 12. 1. 공람은 10년 단위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것을 말한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용산구는 일간지 2개와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위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람의 형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눈여겨보아 인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용산구청이 2003년경에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는 세입자들로부터 들을 수 없었다[4].

그렇다면 2003. 12. 1. 공람공고 후에 들어온 세입자들 모두가 개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용산4구역에서 실제 구역지정 고시는 2006. 4.에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관계인' 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통상 사업인정고시일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해석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5]가 있은 때 위 법상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용산4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보상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문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다.

한편, 이주정착금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되어 이것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사업시행 인가일로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쟁점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맡겨져 왔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거 세입자들에 대해 지급할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산정' 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준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반면에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만 취급하고 있는 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점,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로부터 실제로 세입자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퇴거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사업시행자로서는 재량으로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나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등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지정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주거이전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당시 바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6].

4) 용산구청은 누구로부터 무슨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5) 용산4구역의 경우, 2007. 5. 31. 이루어졌다.
6)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916. 위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미비와 보상의 주체인 조합의 형식적인 보상금 산정, 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관청의 직무유기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이외에도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도 이주대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상의 내용도 단순히 보상금 액수의 증액만을 문제 삼아서도 안 된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보상의 기준을 삼는 해석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해석에도 반하는 것이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보상의 기준일로 삼는 것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세입자들은 개발 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지 않은 이상 임대목적물이 소재한 곳의 개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상가세입자들이 위와 같은 공람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니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하면서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고된 바에 의하면 건물주들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만약 개발 사실을 임차인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5~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례들이 있다.

3. 각종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되기만 한 세입자들의 문제

가. 재개발 사업은 본래 도시계획의 하나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용산4구역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이라 한다)에 따르는 뉴타운 사업 등은 모두 도시계획의 하나로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성질상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공공이 모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민간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7]. 다만,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등이 여전히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는 모두 관할관청의 인 · 허가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8]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등의 문제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의 인 · 허가 절차는 재개발사업의 실질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형식적, 요식적 절차가 되고 있으며[9], 개발의 주체인 민간조합은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와 유착하여 온갖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막대한 금원으로 개발 초기단계에서 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면, 이후에는 서면결의서를 동원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절차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을 정도로 조합의 운영은 불투명함에도 관리관청은 조합 내부의 일정도로만 치부할 뿐 법에 부여된 어떠한 관리, 감독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형사고소 및 관련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도심 재생사업은 오히려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훼손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종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도정법을 개정하여 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순차적 공영개발을 통해 도심 재생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심 재개발에 따른 보상은 원주민의 재정착과 상가 세입자들의 계속적 영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대부분의 재개발이 민간조합에 의해 주도되다보니, 개발로 인해 종전의 거주지 및 영업장소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미비와 보상의 주체인 조합의 형식적인 보상금 산정, 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관청의 직무유기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이외에도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도 이주대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10], 보상의 내용도 단순히 보상금 액수의 증액만을 문제 삼아서도 안 된다[11].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이주대책이 제공되지 않는 상

7)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에서 검토되어야 할 도심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개발이익을 위한 잔치로 변질되고, 일부에서는 도심 재생사업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격하시키는 것은 도심 재생사업의 본질에 비추어보더라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8)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9) 용산4구역의 경우, 용산구청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세입자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조합의 형식적 보상금 지급 계획만을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었으며, 이후에는 이전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을 '생떼쟁이'라며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10)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아예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11) 현재와 같이 주변지역마저 재개발로 인해 소형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임대료 등이 폭등한다면 단순히 보상금 액수만을 증액한다고 하여, 세입자들이 개발 이후 같은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재정착하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상의 문제뿐 아니라,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들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자신들이 임차하려고 하는 곳에 어떠한 내용의 개발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발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강제 퇴거되는 운명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태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수입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3개월분 월수입 상당의 휴업보상금[12]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보상금과 보증금만으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인근지역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발 후 같은 지역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보상의 문제뿐 아니라,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들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자신들이 임차하려고 하는 곳에 어떠한 내용의 개발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발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강제 퇴거되는 운명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용산4구역의 대부분 세입자들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서부터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정보로부터 소외되고, 개발절차 진행 중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보상금만으로 이주를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는 상가 세입자와 달리 주거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권과 4개월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용) 등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어느 정도 재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재개발조합 및 관할관청에서 각종 기망의 방법으로 주거 이전비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13], 임대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등으로 종전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어떠하든, 주거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통해 이주대책이 미미하나마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계속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주대책 등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지출한 각종 비용(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과 그동안 형성한 상권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형식적인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가 세입자들로 하여금 재개발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것이 수십 명의 용산4구역 상가 세입자들을 망루에 올라가게 만든 배경이다.

용산4구역 상가 세입자들이 주장했던 주요 내용도 '대체상가 보장', '개발 후 우선 임차권 보장'으로, 세입자들은 재개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단순히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과거 청계천 개발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로 하여금 문정동에 대체상가를 마련하여 이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상인들의 계속적 영업을 보장하여 주었다.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책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체상가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세입자들은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의 중재로 조합과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망루 투쟁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도정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심 또는 부도심의 기능회복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존의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상권을 턱없이 비현실적인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빼앗아가는 사실상의 재산 몰취'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입자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는 영세 가옥주 및 세입자들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개발사업만 밀어붙인 관할관청, 중앙 정부(서울시), 건설업체의 공동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다. 세입자들의 충분한 이주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순환재개발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이익만을 쫓아 난개발 · 과속개발 · 폭력개발이 난무하는 현재의 재개발 – 뉴타운 개발방식을 수정하여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두 가지 각 영역별로,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지원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원주민재정착율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공영개발로 발전시키고, 〈민간개발〉(합동재개발방식)의 경우에는 개발이익만을 쫓아 추진하는 현행방식에서 조합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합과 시공사를 견제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공공 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민주적 재개발로 발전시키며, 〈광역개발〉을 위한 수 개의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개발지구)을 포괄하는 광역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과속개발을 막고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형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폭등을 경험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약 13여 만 채의 주택이 철거될 것이라고 한다.

12) 용산4구역의 경우, 평균 2,500만원 상당.
13) 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권과 주거이전비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철거깡패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 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철거를 위해 투입된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 같은 용역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각종 폭력사례들은 '무법천지' 가 따로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제2, 3의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도심 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의 경우 광역,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4. 강제퇴거 및 철거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가. 철거업체의 문제점

세입자들은 '철거깡패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 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철거를 위해 투입된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 같은 용역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각종 폭력사례들은 '무법천지' 가 따로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주민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명도소송)를 거쳐야 하며, 위 소송의 결과 강제집행에 이르더라도 강제퇴거절차는 반드시 집행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강제퇴거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철거를 위한 용역업체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용산4구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오자마자[14] 철거업무만을 담당해야 할 철거업체 직원들이 건물 경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공공연히 강제퇴거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호람건설 · 현암건설산업, 시공사들은 2007. 10. 31.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이하 '철거도급계약' 이라 한다)'[15]을 체결했다.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착공일부터 10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정하고, 철거완료시 오십일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되 공사 기간 안에 철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철거업체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공사가 맡고 철거업체는 업무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시공사에 보고하며 시공사의 지시사항에 성실히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계약서에는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는 철거업체가 주관하고 시공사가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철거업체인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지만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철거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철거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재개발 구역 내 상주경비"를 계약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조합과 체결하였다.

이들 철거업체가 행하기로 한 업무 중 특히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16]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얻지 않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업자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명도절차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후 조합이 얻게 되는 사용수익권을 근거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용산4구역의 명도절차는 2008. 5. 30.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부터 추진되었으며 철거업체 역시 미리 들어와 거주 및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인가과정이 사후승인과 다를 바 없는 현재 개발제도의 문제점이 철거업체의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조합과 철거업체의 계약일 이후로 용산4구역에서는 강제퇴거가 집행되기 시작한 셈이다.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사람의 퇴거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철거업체의 근본적 문제이며 범죄이다.

나. 시공사의 문제점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철거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 를 철거업체들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철거업체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일매일 시공사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므로, 시공사들은 철거업체들이 세입자들의 퇴거를 하기 위해 벌인 각종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14) 용산4구역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온 2008. 5. 이전부터 이미 철거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퇴거를 위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15)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
16) 제2조 제1호 가목: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도심 재개발이 단순히 개발이익을 쫓는 수익성 좋은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과 관련한 행정 하나하나, 법률 규정 하나하나에 위와 같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17], 철거업체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시공사들은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이들 철거업체들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삼성물산 등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산구청의 책임 방기(일방적 편들기)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인 · 허가권을 가진 자로서 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역 안의 모든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기관으로서 용산4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재정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의 문제를 민간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협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세입자들로부터 사업상의 문제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에도 시정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결사인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무단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편파성을 보였다.

라. 경찰의 직무유기

위와 같이 주민들이 철거업체 직원들로부터 각종 폭력, 성희롱, 협박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출동을 미루다 마지못해 출동해서는 쌍방폭행의 문제로 몰고 갔다는 보고가 빈번한 바, 경찰의 직무유기가 도를 지나쳐 사실상 조합과 철거업체의 비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제퇴거는 반드시 법원의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퇴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며, 강제퇴거에 있어서도 유엔에서 권고하는 기준 등을 지키도록 토지보상법 및 행정대집행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등

도심 재개발사업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가 주체가 된 민간조합이 재개발의 주체가 되면서 재개발은 도시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개발이익의 쟁탈장이 된 듯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이 대표적인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이유 역시 공공성을 상실한 재개발 절차 전반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서울 강북지역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는 여러 정비구역을 하나의 광역재정비구역으로 포괄하여 A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A지역의 주민들을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B지역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절차 내에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대용상가'를 확보하여 공급함으로써 상인들로 하여금 인근지역에서 유사, 동종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광역, 순환개발은 공영개발에 의하도록 하고, 공영개발에 따를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나 기반시설을 공공이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강제퇴거에 동원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현재의 무법상태를 청산하여, 강제퇴거와 철거 절차를 명백히 구분한 다음 퇴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는 야간퇴거금지나 보상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등 유엔의 권고기준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심 재개발이 단순히 개발이익을 쫓는 수익성 좋은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과 관련한 행정 하나하나, 법률 규정 하나하나에 위와 같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짓밟힌 철거민의 인권과 효율성

용산참사 유가족을 만나다

정리 _**이경은**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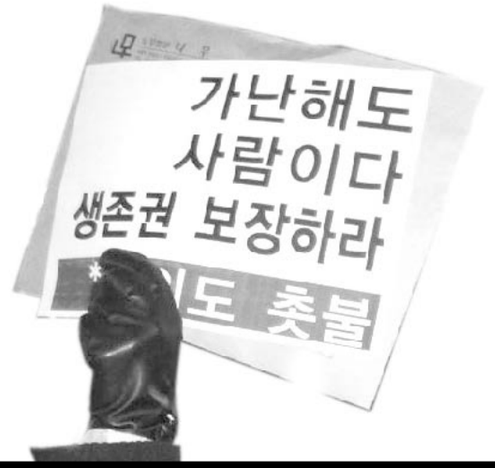

민주변론 편집진은 지난 3월 11일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찾았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유족들은 장례식을 거부하고 서울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장례식장의 4층에서 숙식을 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덧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껴가고 있는 용산참사 때문인지, 장례식장 부근은 병원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전경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입구에 늘어선 조화와 담벼락 위에 걸린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가 아니었더라면, 여느 장례식장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장례식장 1층 길가에 늘어선 조화들, 유족들 중 용산참사로 희생된 고 이성수 씨의 부인인 권명숙 씨와 같이 희생된 고 이상림 씨의 며느리이자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장으로 구속된 이충연 씨의 부인인 정영신 씨를 만났다. – 편집자 주

일시 2009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진행 황희석 회원, 이경은 인턴, 황혜정 인턴
대상 고 이성수 씨 부인, 고 이상림 씨 며느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부인

황희석 희생자들이 돌아가신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최근 49재 기일이었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계속 영안실에 계신 심정이나 앞으로의 계획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정영신 우리에게는 지금 장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장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의경이 제대를 하고 얼마 전에 영안실에 왔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전경들은 현장에 있었을 뿐인데 왜 죄송하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을 밝히는 것은 제 일입니다.

사건 현장 검증에 대한 의문점

황희석 검찰은 이충연 씨를 비롯하여 망루 4층에 있던 용산 철거민들이 경찰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경찰을 향해 불붙인 화염병을 던져 그 때문에 경찰이 죽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루 4층에 내몰려 있던 데다가 그 내부에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이 죽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서 과연 화염병을 던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 대처를 할 방안이 있을까요? 정치권이나 여러 단체에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영신 우리도 특검을 하고 싶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검증도 못 하는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권명숙 치사라고 한다면 현장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장은 경찰이 다 치워놓고 무슨 현장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신 지금 아예 현장이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권명숙 시신도 유가족 동의 없이 다 부검했습니다. 최소한 시신을 가져가서 부검하기 전에 유가족은 보여줘야 했던 것 아닙니까?

황희석 통 상적으로 부검하기 전 유가족에게 동의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영신 유가족이 그날 현장에 다 있었고, 사상자의 시신을 확인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시신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원파악을 한다고 유가족 동의도 없이 부검을 했는데, 부검이 아니어도 반지, 차키 등 신원 파악할 것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검을 다하고 나서 신원파악

저희 시부모님이 한 장소에서 25년 장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리 길게 해도 1, 2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계약서야 당연히 2006년, 2007년에 새로 쓴 것이니까 2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2003년부터 이 사업이 구상 중이었으니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치면 전세계약서를 다 10년, 20년 짜리로 바꿔야 합니다.

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살아왔고, 단지 그 옆에서 재개발 진행 중인 3년 동안만이라도 옆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흑석지구는 재개발 때 가수용 임대 상가를 빌려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되고 왜 우리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조합, 구청, 경찰, 기업, 용역 모두가 한 팀

황희석 철거업체인 H건설사 등의 4개 업체와 시공사인 S기업, P기업 등의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매일의 철거상황을 시공사에게 보고하게 되어있고, 철거가 지체될 경우 하루에 오백만원이 넘는 돈을 시공사에게 배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사건 전이나 후에 삼성이나 포스코에서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까?

정영신 전혀 없었습니다.

황희석 삼성이나 포스코 등 시공사와 서울시, 경찰 등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서야 이런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인데도, 시공사는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까?

정영신 우리 지구는 조합, 구청, 경찰, 기업, 용역 등이 모두 다 모여서 한 팀입니다. 법적으로 구청이 막아주고, 경찰이 지켜주고, 기업이 돈을 대주고, 용역이 힘쓰고 등등 이런 식입니다.

황희석 전철연 이외의 다른 외부의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정영신 우리도 민노당 등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쪽과는 얘기가 안 맞는 게,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쪽에서는 '보상금의 몇 퍼센트, 영업기간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다' 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제시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을 원했는데, 여기에 맞는 것은 전철연밖에 없었습니다.

황희석 재개발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있을텐데요. 이것을 외부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주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어떤 업체였는지요?

정영신 예전에 용산 5구역 조합장을 했던 정비업체의 아들이 운영하는 P회사입니다. 정비업체가 미리 다 짜놓고 P회사를 설립해서 아들을 대표로 세워 우리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황희석 지난번에 정부에서 도시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법안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보상금과 원주민 유지 비율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입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영신 이것은 그들의 기준에 맞는 권리금만을 약간씩 줄뿐 본질적인 개선책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용지에 경제적 수익도 없는 임대아파트를 주겠습니까? 도시환경사업은 상호 합의 하에 임대아파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용역을 씁니다. 용역을 써서 우리 같은 사람을 내보내야지 수익이 나니까요.

임대 계약과 보상 문제

황희석 용산에서 어느 정도 장사하셨습니까?

정영신 저희 시부모님이 한 장소에서 25년 장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리 길게 해도 1, 2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계약서야 당연히 2006년, 2007년에 새로 쓴 것이니까 2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2003년부터 이 사업이 구상 중이었으니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치면 전세계약서를 다 10년, 20년 짜리로 바꿔야 합니다.

추모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

황희석 최근에 학생들이 분향소에 벽화를 그리다가 연행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영신 그런 것까지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중 한명도 분향소에 갔다가 경찰에게 폭행당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시민들이 분향소에서 추모하는 것도 경찰이 다 막고, 심지어 유족이 분향소에서 추모하다가도

인근 주민들을 보면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 주변으로 운동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신랑과 19일에 통화를 했을 때
자기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눈이 매워서 눈을 뜰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막고 있어서 나올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맞아서 다쳤습니다. 왜 유가족 때린 경찰은 구속 안 되고 유가족만 구속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 검찰의 주장과 우리의 진실

황희석 경찰, 검찰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경찰이 예전에 철거민 농성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빨리 특공대를 파견하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 같습니까?

정영신 작은 것을 숨기기 위해 덮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입을 열어야 알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황희석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사퇴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측에서는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용역업체조차도 불구속입니다.

정영신 용역업체는 구속은커녕 지금도 현장에 나와서 판을 칩니다.

황희석 제보를 받았는데,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명숙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을 인터뷰를 해도 언론 보도에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일부러 안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황희석 경찰들은 1월 19일 상황을 계속 말하며, 신속하게 특공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쪽에서는 그 때 시위대가 일반 시민들을 위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명숙 우리는 어디에서 인터뷰를 오시든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을 합니다. 계속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몇 번씩 말합니다. 이 내용도 벌써 몇 번이고 이야기했는데 보도가 안 된 것입니다.

정영신 19일은 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망루에 지붕도 없을 때인데도 용역과 경찰에서 계속 물대포를 쏘고, 용역이 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구타를 했습니다. 용역들이 계속 자극을 해서 끝내 4층에 땜질을 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4층은 밥 먹는 공간이었는데, 도저히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계속 까만 연기까지 피웠습니다. 우리는 용역이 더 이상 오면 죽을 것 같아서 더 오지 말라고 방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골프공을 던진 적도 없습니다.

황희석 검찰 쪽에서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서에서 써놓았습니다.

정영신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다 빈 공간을 향해 던진 것입니다.

황희석 불구속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도 실제 사람을 향해 쏜 적은 없고 실수로 날아간 적이 몇 번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천막을 태웠지만, 그쪽에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다고 나옵니다.

정영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정말로 150번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1차선을 막았는데, 그 버스가 무리하게 1차선으로 지나가려다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희석 19일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영상이 있고, 19일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는 증언도 있어 변호인들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19일 상황이 별게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20일에 특공대를 투입한 게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영신 인근 주민들을 보면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 주변으로 운동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신랑과 19일에 통화를 했을 때 자기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눈이 매워서 눈을 뜰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막고 있어서 나올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권명숙 19일에 용역이 막고 있어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황희석 자고 일어나니 못 내려오는 상황이 됐더라는 말이군요.

정영신 진압 당시에도 분명히 용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20일 새벽에도 3층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특공대가 투입됐을 때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들도 겁나서 뛰어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것도 봤습니다.

법은 있는 사람은 합법이고 없는 사람은 불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법! 법! 해도 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이 서민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우리는 망루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드릴 수 있는 한 다 두드렸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용역한테 두드려 맞고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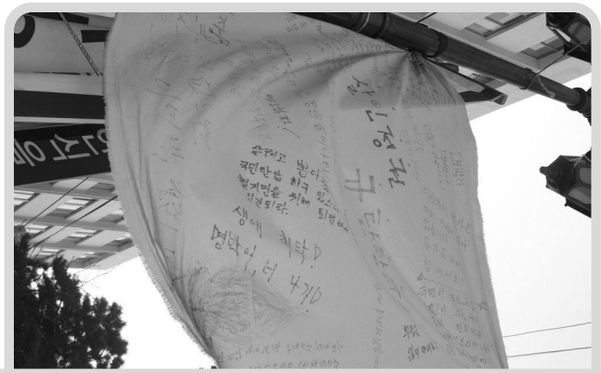

그런데 왜 20일에 용역이 없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희석 이건 무전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권명숙 그러니까 왜 무전으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라도 받게 해주세요."

정영신 제 신랑이 비록 잡혀서 수감되어있지만 다쳐서 환자인데, 다리가 심지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제때 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속되었어도 환자인데, 왜 치료조차 제때 안 해줘서 사람 다리를 굳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희석 변호인단 측에서 치료를 위해서라도 집행정지를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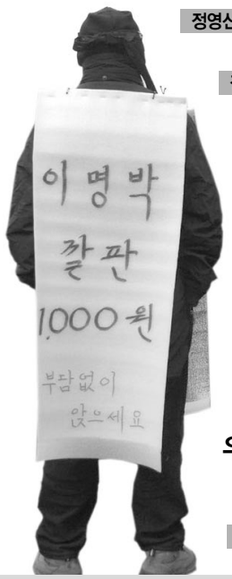

정영신 상태가 심각한 사람도 치료를 안 해줍니다.

정영신 시모 이제는 등이나 가슴 등까지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정영신 체포 당시에도 사복경찰 2~30명이 MRI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문상도 못하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와서 항상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 기사가 나가는 것은 다 잘려서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르지 않고 다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기자한테 따져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황희석 끝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권명숙 진실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상규명이 돼서 사망자들이 편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황희석 변호인단은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만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권명숙 법은 있는 사람은 합법이고 없는 사람은 불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법! 법! 해도 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이 서민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우리는 망루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드릴 수 있는 한 다 두드렸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용역한테 두드려 맞고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황희석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명숙 우리는 끝까지 합니다. 유가족들이 흐트러짐 없이. 이게 어떤 일인데 잊겠습니까.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만 합니다. 왜곡된 수사는 말도 안 됩니다.

인터뷰 중 한 유가족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분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돼서 우리아이들에게 너희 아빠가 명예로운 아빠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적당한 샤워실이나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조차 갖춰지지 못한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지금도 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이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행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이 잊혀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가족들. 시대를 거스른 듯한 비민주적인 이 사건에 대해 민주적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미네르바 사건과 사법의 후진성

글 _김갑배 회원

출처: 한겨레신문

검찰의 인터넷 논객 체포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논객이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2008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2백 수십 편에 달하는 경제관련 글들을 올렸다. 그는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고, 9월 10일에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부도를 예측한 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경제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국가가 침묵을 명했다며 절필을 선언하기도 하였는데, 12월 29일 오후 1시 20분경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라는 제목으로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글을 아고라 토론방에 올리자 그 직후 기획재정부가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을 하였고, 위 글은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는 그 글의 진위내용을 파악한다고 하면서 즉시 내사에 착수하여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들을 수집하였다. 그 다음날 마약수사과는 "다음"으로부터 박대성의 인적사항, 아이디, 패스워드, 10월 이후 3개월간의 모든 로그인 기록, IP 등을 확보하였다. 그 다음날 "SK브로드밴드"에게는 12월 20일, 28일, 29일 각각 특정시간 3개의 인터넷 접속기록만을 요구하여 이들 3개가 박대성의 IP주소지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09년 1월 2일 오현철 검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손병두 외화자금과장을 출석시켜 위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1월 7일 박대성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경제관련 서적 등을 압수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따라 나선 그를 조사 중 아고라에 글을 올린 혐의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검찰은 2008년 7월 30일 『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 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중단"이라는 글도 허위사실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시켰다. 1월 8일 검찰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그 날 17시 16분부터 34분까지 오현철 검사가 박대성에게 1월 7일자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과 1월 8일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는 과정을 녹화하였다.

관행적 수사절차

긴급체포를 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무시하였다. 검찰은 1회에서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논객을 장시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외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이것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다. 또 영상녹화의 경우에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것은 신문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미 작성하고 나서 그것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었는지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는 과정만을 녹화한 것은 그 요건이 결여된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오 검사는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월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형사 수석부(허만, 이승호, 이재신)가 담당하

긴급체포를 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무시하였다. 검찰은 1회에서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논객을 장시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여, 1월 14일 오전 열린 심리에서 이재신 판사가 진행하였고, 그날 오후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기각이유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통신사실 외에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법관은 법률을 위헌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할 수 없고, 위헌의 의심이 드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적어도 법원이 위 법조항을 인터넷상 표현내용에 적용할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헌법적 문제를 검토했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적용이 오류이거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권 원칙에 의거 국가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국가기관 자체에 대한 비난은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사유로 외환시장이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구속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박대성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여 자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서울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박대성이 석방되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세간의 예상을 깨는 일이었다.

검찰의 구속기소와 공판

오 검사는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박대성을 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 5.경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경제토론방 '아고라'에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약 280편을 작성하여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하였던 사람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경제동향에 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 · 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큰 명성을 얻어 피고인을 경제대통령으로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되 나머

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외국환 평형기금 제도를 변경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외화예산환전 업무를 중단하고 종전방식대로 환원하였고 외환보유고가 2,475억 달러나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화예산업무 의미도 모르면서 2008. 7. 30.경 인터넷에서 "8. 1.부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라는 뉴스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마음먹고, "외화 예산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2008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 정부 긴급업무 명령 1호–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명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 5단독 이현종 판사에게 배당하였다. 변호인은 1월 28일 보석허가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 판사는 2월 5일 오후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적용법조의 위헌성 및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기일에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보석심리를 진행하였다.

그 후 2월 13일 오후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박찬종 변호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오 검사가 증인으로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손병두,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장 이은모, 연합인포맥스 기자 이성규를 신청하였는데, 증인 채택은 보류하면서 다음 공판을 연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공판기일을 3월 9일로 정하였다.

이 판사는 부장으로 승진하여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다. 그 후 형사 5단독을 맡은 유영현 판사가 3월 9일 오후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유 판사는 위 증인들을 채택하고, 1회 공판기일을 3월 17일 오후

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에 의해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문리해석방법이다. 여기서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을 국어의 용법 및 상식에 맞게 문리해석하면 통신 자체가 허위인 것을 말한다.

로 지정하고 준비절차를 종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당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기각되었고, 공판기일도 3월 23일 오후로 변경되었다. 3월 23일 오후 1회 공판기일에 위 증인이 모두 출석하여 검사가 이 팀장, 손 과장, 이 기자 대하여, 박 변호사가 김 교수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모두 4시간여 동안 이어나갔다. 판사는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라면서 공판기일을 4월 6일 오후로 지정하였다.

보석기각과 구속의 장기화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보장하고 있는 바,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된 경우 보석으로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한다. 이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그 취지가 도망의 우려라는 보석기각 사유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이다. 박대성이 글을 작성한 것, 허위성 여부에 관한 증거는 수사과정에서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법원이 도망의 우려라는 이유를 내세워 필요적 보석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고,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처음부터 구속해서는 안 될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장기간 구금상태에 두고 재판을 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적용의 문제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한 법조항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이다. 이 조항은 1961년 12월 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전기통신법』에 규정한 것이다. 당시 일반국민들은 전화나 전보만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는데, 전화나 전보의 송신과 수신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였고, 그리하여 전화국이나 송신자 또는 수신자를 거짓으로 하여 통신의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에 의해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문리해석방법이다. 여기서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을 국어의 용법 및 상식에 맞게 문리해석하면 통신 자체가 허위인 것을 말한다.

1983년 12월 30일 동법을 분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규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운영 및 이용을 규제하였다. 위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이때 분리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어 통신내용을 규제하였는데, 이 때 처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통신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는데 그쳤다(헌법재판소에서 2001년 6월 위 제53조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되자, 그해 12월 9개 유형으로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9개의 유형에서 각각 "~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 1월 이 9개 유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그대로 옮겨졌다.

동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컴퓨터 통신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규제하여 위 조항을 두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을 규제하여 "통신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다가 그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 규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통신기본법』조항이 정한 "허위의 통신"은 "통신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같은 날 제정된 전파통신을 규제하는 『전파법』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동법에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허위통

나치 패망 직후인 1945년 연합국 점령위원회는 『점령위원회법률』을 통해 『선동행위처벌법』등 25개 악법들을 지목하여 폐기하였다. 미국 점령구역에서 『나치불법청산법』(1946년)에 의해 나치의 관점에서 처벌된 것으로 인정되는 『선동행위처벌법』 등 9개 법령에 기초한 유죄판결들은 법원의 결정이 없이도 파기되었다.

신"이라고 규정하고, 2006년 6월 국회에서 동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의 통신"을 "거짓으로 통신"으로 자구수정하였다. 이것을 보면 "허위의 통신"이란 "허위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짓통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조항을 인터넷상 "허위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을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경우 이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기소는 법적용의 오류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곧바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법률을 합헌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만큼, 위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해야 마땅한 것이다.

나치시대의 불법판결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자. 이 법조항의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라는 구성요건은 "허위주장 또는 심각하게 왜곡된 주장을 고의로 유포한 자"라는 나치시대 『선동행위처벌법』 구성요건이나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왜곡전파행위 금지"라는 긴급조치 조항과 차이가 없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된다.

히틀러의 주도하에 1933년 정권을 장악한 나치당은 소위 수권법, 즉 『민족과 국가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치 패망시점까지 법률과 명령을 제정하였다. 나치당에 의해 제정된 악법 중의 하나가 "국가의 안녕이나 정부, 나치당, 그 지부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주장 또는 심각하게 왜곡된 주장을 고의로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1934년 12월 제정한 『선동행위처벌법』이다.

이후 수 없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치에 반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나치 패망 직후인 1945년 연합국 점령위원회는 『점령위원회법률』을 통해 『선동행위처벌법』등 25개 악법들을 지목하여 폐기하였다. 미국 점령구역에서 『나치불법청산법』(1946년)에 의해 나치의 관점에서 처벌된 것으로 인정되는 『선동행위처벌법』 등 9개 법령에 기초한 유죄판결들은 법원의 결정이 없이도 파기되었다. 영국의 점령구역에서도 『형벌면제령』에 의해 폐지된 법률에 의거한 판결은 법원의 결정이 없이도 파기되었다. 프랑스 및 소비에트 점령구역, 베를린 지역에서는 법률적인 자동파기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재심절차에 의해 불법판결들이 파기되었다.

나치 시대의 불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는 개별심사방식이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불법판결들을 제거하는 데에 역부족 상태였다. 1985년 독일 연방하원은 나치 하에서의 민족재판소를 법치국가적 의미에서 법원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의 자의적인 테러수단이라 규정하고 민족재판소의 판결들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 후 1998년 독일 연방의회는 포괄적인 불법판결을 청산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동법은 "1933년 1월 30일 이후 국가사회주의 불법체제를 위해 정의의 근본사상에 위배하여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종교적, 세계관적 이유로 내려진 유죄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파기대상 판결은 민족재판소 및 즉결처분재판소의 판결과 59개 법령에 기초한 판결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민족재판소, 즉결처분재판소, 유전병판정재판소의 판결 모두, 군사재판소 판결 일부가 파기되었고, 2002년 법 개정으로 병역거부와 탈영죄에 대한 판결도 법률에 의해 파기됨으로써, 독일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나치 치하의 불법판결을 청산하게 되었다.

위헌적 긴급조치 판결

우리의 경우 40여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위헌적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선고된 판결들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조치 및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

흔히 법관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잘못된 법실증주의는 소극성과 기회주의, 무책임한 도피처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한 나치시대 법관들과 법학자들의 법실증주의 논리는 독일에서 5, 60년대까지 통했던 것이고 이미 극복된 논리이다.

하고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다음, 의결절차와 공고기간을 무시하고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개정안을 공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여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이 위헌적 방법으로 통과된 유신헌법에 긴급조치권이 신설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한 후 1975년 5월 13일 선포한 긴급조치 제9호가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왜곡전파행위 금지"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 · 구금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신헌법에 긴급조치권을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동된 긴급조치는 위헌적이었다. 긴급조치권이 사전적 · 예방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동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긴급조치의 발동 당시 상황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시킴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그 내용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이론이 적용된다. 긴급조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라는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사법의 후진성

민주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유엔헌장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는 튀니지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것으로 보이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0년 짐바브웨 대법원은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

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선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검찰이 인터넷상 표현내용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을 적용하여 무리하게 기소하자, 법원은 별 검토도 없이 유죄판결을 하고 있다. 법관들이 위 법조항에 대하여 법해석을 해보기라도 한 것인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생각이라도 해본 것인지, 아니면 인권의식이 먼 구시대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사법이 어디로 행하고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월 12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 정보통신망법제70조제2항 명예훼손 상상적 경합)에 대해 징역 10월 실형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0월 22일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형법제232조의 2 사전자기록위작,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 실체적 경합)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이에 대해 항소심인 형사항소4부 최정열 부장판사는 1월 1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2008년 12월 30일 촛불시위 당시 '기동대 전경 일동이 촛불집회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 형법제307조제2항 명예훼손 상상적 경합)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 김민기 판사는 9월 19일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해 중고생이 단체 휴교한다는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 김민기 판사는 2009년 2월 20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된 동영상 정지화면과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법실증주의를 내세운 법관들의 자기합리화 논리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사법적극주의 논리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법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써 과연 얼마나 긴 기간을 뒤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무책임한 법실증주의

흔히 법관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잘못된 법실증주의는 소극성과 기회주의, 무책임한 도피처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한 나치시대 법관들과 법학자들의 법실증주의 논리는 독일에서 5, 60년대까지 통했던 것이고 이미 극복된 논리이다. 1975년 독일 개정형법은 법률문제를 주관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법관 등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형법의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근대 형법은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래 거짓으로 통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조항을 허위사실 유포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논하기에 앞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용의 오류이거나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

만일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법실증주의를 내세운 법관들의 자기합리화 논리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사법적극주의 논리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법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써 과연 얼마나 긴 기간을 뒤떨어져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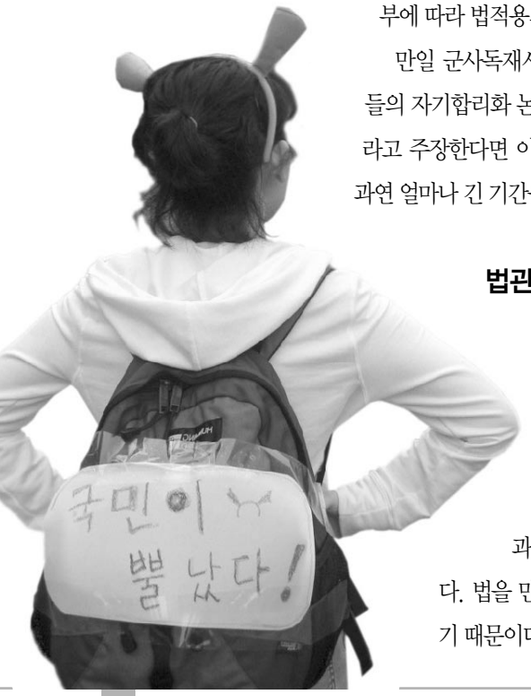

법관 독립의 의미

신영철 대법관의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사건에 대한 편파배당 및 재판개입 사건은 법관의 독립을 새삼스럽게 환기시켜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의 독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며 그 법에 의해 심판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을 한다면, 국민들은 법의 목적이 아니라 통치의 수단이며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나 집행과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요구된다. 더욱이 재판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감시하고 판결을 비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알권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원이 행하는 판결은 정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상식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판결이 정당해야 한다. 국민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유죄라며 구금하면서 사법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보편성과 상식이 결여된 판결은 무엇을 말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사법이 우물 속에 갇힌 논리의 함정에 빠져 보편성을 상실, 국민들의 자긍심마저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법관의 냉정한 두뇌보다는 국민의 인권과 고통을 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상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사적 흐름에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면, 법관의 독립은 사법의 후진적 현상을 극복하고 미래로, 보편적 인권을 향한 발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

글 _**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변호사

지난 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협상파동은 오프라인에서는 "촛불시위를", "온라인에서는"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두 경우 모두 기술의 진보가 시민들 간의 네트워킹을 새로운 차원에서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과거 80년대의 운동권 활동가들이 사용하던 조직기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촛불집회의 일시, 개최, 여부, 진행방법 등은 모두 인터넷상에서 신속하게 전파되는 의견교환으로 결정되었고, 집회상황은 웹캠과 노트북으로 무장한 1인 미디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세계로 방송하였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조를 손바닥 뒤집듯한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거부감 표시 역시 인터넷 기술에 힘입어 놀라운 파급력과 결집력을 가질 수 있었다. 신문 자체에 대한 구독중단 운동은 국내 언론기업의 수익구조상 별 영향력이 없으므로 언론사 수익의 핵심을 이루는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인터넷 토론과정에서 수렴된 것이다. 언론사 광고주들의 연락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손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인터넷의 당연한 기능이다.

촛불집회와 광고불매 운동이 '인화력'을 가지게 된 일차적 이유는 물론 그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부조리함이 많은 시민의 감수성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시장을 장악하는 매체들이 긍정적 보도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의 저항과 반감이 신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Web 2.0"이라고 통칭되는 인터넷 신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 단순히 게시판에 접속하여 댓글을 다는 수준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기술들이 그 사이 등장하였다. RSS 피드(feed) 기능을 장착한 웹 블로거들의 사이트는 그 사이트에 새로운 게시물이 등장하면 그것을 온 세상으로 송출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트랙백(Trackback)기술을 지원하는 웹 사이트들은 그곳에 게시된 내용을 본 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새로운 글을 게시하면 그 새로운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의 글이 게시된 웹 사이트에 자동으로 링크된다.

이 기능 때문에 어느 페이지를 방문하여 글을 읽는 자는 그 글과 관련된 여러 다른 글들을 쉽게 찾아가서 읽어볼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토론과 담론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태그(tag) 기술도 있고 수십만 웹 블로그의 글들을 모두 수집하여 분야별 의미별 주제별로 재정렬하고 관심을 많이 끄는 글을 더욱 두드러지게 제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촛불이나 불매운동 등의 태그 하나만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논의 전개 현황을 금방 추적 파악하고 자기도 그 논의 한 복판에 참여하여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래 검색엔진이 제공하던 초보적 정보수합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은 종래 상상 못하던 수준의 인적 네트워킹이 담론의 내용과 의미에 기초하여 기술 매체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시대 즉 "의미에 기초한 웹(Semantic Web)"의 개막이 임박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전통적 권력균형을 뒤흔들고 재규정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재래식 미디어가 누려왔던 정보소통에 대한 장악력이 급속히 해체되고, 피동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수용만을 강요당하던 시민들 각자가 이제는 모두 능동적으로 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로 무장된 인터넷을 '불온'하고 '저속'한 것으로 폄하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 사법당국의 대처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기술에 대한 완연한 '부적응'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과거 80년대식의 '주동자 색출'에 매진하여 몇몇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체포하여 기소하였고,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하여는 그 당시 광고 불매를 호소하던 무수한 웹사이트들 중 '이름이 그럴듯한' 어떤 웹사이트 하나를 지목하여 그 사이트 운영자들을 역시 '주동자'로 규정하여 기소하였다. 더 이상 누가 주동하고 누가 동조하는 시절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할 기술 지식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임의로 누구를 찍어서 일벌백계 하면 위하적 효과는 거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의 표출에 불과하다.

그러나 촛불시위 '주동자 색출' 해프닝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순전히 오프라인 상의 '공모행위' 이론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아예 온라인 측면을 제거한 재래식 법리체계 내에서는 나름의 일관은 있다. 그러나 광고 불매사건에 동원된 법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기소는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온라인상에 무모하게 확대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위력'을 실제로 형성 · 행사한 자, 실행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시도조차 않고 있다. 누군가가 전화를 많이 걸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어떤 자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거의 우스개 소리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

촛불집회와 광고불매 운동이 '인화력'을 가지게 된 일차적 이유는 물론 그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부조리함이 많은 시민의 감수성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시장을 장악하는 매체들이 긍정적 보도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의 저항과 반감이 신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Web 2.0"이라고 통칭되는 인터넷 신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

전화를 한 자들이 과연 이 사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알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전화를 한 자들은 모두 '순차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광고 불매 '아이디어(idea)'를 최초로 유포한 '진원지(originator)'라는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은 그 아이디어 자체는 사법(私法)상의 저작권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적 장악하거나 시원지(originator)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순차적 묵시적 공모'라는 검사의 황당한 발상은 RSS, 트랙백, 태그,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등 Web 2.0 기반 기술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 바로 이 기술들로 형성되는 "의미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킹"을 검사는 '형법상의 공모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에 복고풍 거부반응을 보이는 러다이트(Luddites)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사건 피고인들을 유죄로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사법부를 조롱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정파적 편향성을 의심받도록 만들며, 심지어는 동일한 정파적 입지에 근거한 관련 사례들 간에도 일관성 없는 자의적 법 적용이라는 비난을 일거에 뒤집어 쓰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문화방송 광고주 불매운동은 묵인하고, 친정부적 논조의 신문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만을 처단하는 행위는 방어하기 어렵다. 그리고 촛불집회 역시도 무수한 웹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창 선동하고 검사가 말하는 대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거대한 규모의 이른바 '불법집회'를 한 사례이다. 따라서 왜 "MB OUT" 이나 '명박산성 까부수기' 등을 주창한 무수한 웹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지를 누가 물으면 그 대답은 "엿 장수 마음대로"라는 말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긴급토론회 지상중계

'수렁'에 빠진 사법부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

정리 _**김현기 · 황혜정** 인턴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위기에 처해있고 특히 '신뢰'의 위기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은 사회의 신뢰와 통합을 이끌어 내는 최종적 해석과 판단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 이러한 본연의 역할은 커녕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결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사회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시험대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민변 백승헌 회장

최근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신영철 대법관(이하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간섭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3월 10일 참여연대와 함께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이하 사회자)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이하 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이하 임),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이하 김)가 참석했다.

사법행정인가? 재판 간섭인가?

사회자 이번 사건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법원 스스로가 배신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수렁에 빠진 법원'이지만, 한편으로 과연 '법원이 수렁에 빠진 것'인지 '이미 수렁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신 대법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법부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임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대법원장과 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관 인사제도를 놓고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인사의 기준이라는 '근무평점'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무평정의 요소가 건강, 심지어 조직 적응력까지 있는데 이것은 인사권자의 호감도가 기준인 수준입니다.

단지 양형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 고 하지만, 이것은 심급제도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직접적인 간섭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신 대법관의 관여는 사법행정' 이라고 하지만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은 제도와 정책에 관한 권한으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행정권으로서, 신 대법관의 관여는 사법행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하게 재판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김 최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민의 권리들이 억압당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문 이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사법행정과 재판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배당은 재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을 사법행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재판으로 봅니다. 특히 사법행정에 따라 배당이 임의로 좌우된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간섭입니다.

문 사법행정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하는 말처럼 사법행정에 대해 대내외비 어쩌고 하는 것은 웃기는 소

리입니다. 어떠한 법률이 위헌제청 되었을 경우,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재판관의 독립된 권한입니다. 이에 대한 간섭은 명백한 재판권 침해입니다.

김 사법행정의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명백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민주화되지 못한 법원 내부의 문제

김 법원이 과거에는 권력과 외압으로부터 독립해야 했다면, 오늘날은 내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에서 사건 배당부터 재판에 대한 간섭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간섭과 이에 따라 재판의 결정이 흔들리는 것은 판사의 출세욕 때문이든 정치적인 외압 때문이든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 이에 대한 대법원 예규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사법파동을 겪었습니다만, 그동안 과연 우리 사법부는 민주화 됐습니까? 대법원 내의 무수한 위헌요소들도 스스로 스크린(감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파동 때마다 그때그때 교묘히 개혁을 피해온 사법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에는 절차와 판결이 있습니다. 이중에 절차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재판 절차에 치명적인 오물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치우지 않고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임 큰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당 문제의 경우 지금 기계적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고 임의배당이 예외로 되어있는데, 예외가 엄격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를 아예 없애고 기계적 무작위 배당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예외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대법원장이 전자우편을 압력으로 느낀 법관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임 대법원장과 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관 인사제도를 놓고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

미국에서 50년간 위헌결정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위헌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현행법대로 판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위헌결정 역사에 대한 무지이거나 왜곡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803년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Marbury v. Madison)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을 심사했습니다.

다. 인사의 기준이라는 '근무평점' 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무평정의 요소가 건강, 심지어 조직 적응력까지 있는데 이것은 인사권자의 호감도가 기준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의도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법관의 입장이 판단기준이어야 합니다. 성희롱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성희롱할 의도를 갖지 않고 행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이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갖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장이 미묘한 시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자우편을 보냈다면 해당 법관들은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잘못된 법관인사 제도가 문제입니다. 독립된 재판이 보장되는 법관인사 제도라면 수평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법원의 인사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수직적 제도이고 철저한 기수주의와 이에 따르는 승진지상주의가 문제입니다. 고법부장판사가 안되면 후배 기수에게 물려주고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강요받는 환경이며, 이것은 숙련된 50대 판사인력의 낭비이자 전관예우의 원인으로 이어지면서 사법부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관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제는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신 대법관의 논리와 반박

임 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 제42조를 들면서 위헌제청된 야간집회 관련 다른 사건의 진행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헌재법 제42조는 단지 당해사건의 진행과 중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 **제42조(재판의 정지등)**
> 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 제2항 및 군사법원법제132조제1항 · 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제199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 26〉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법제47조3항을 간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건의 경우, 위헌여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가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되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판결이 재심 청구가 된다는 것이 법관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법관으로서는 그런 경우에 위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관 고유의 권한이며 이에 대한 종용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미국에서 50년간 위헌결정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위헌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현행법대로 판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위헌결정 역사에 대한 무지이거나 왜곡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803년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Marbury v. Madison)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연방대법원이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을 불러와 연방대법원의 존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50여 년간 위헌법률심사를 자제했으나, 이후로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동안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왜이러나

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과연 법원 문제를 법원에서 진상규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에 대해 '재판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을 특정판사들에게 집중배당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96건 가운데 25건이 일부 재판부 사이에 배당됐고 10건을 특정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 진상조사라는 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대법관이 보낸 전자우편이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침해했느냐 안했느냐는 교묘하게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상조사를 한다고 관련 판사들 불러다가 "침해당했냐? 안 당했냐?" 묻고 있는데 코미디입니다. 재판권이 침해당했는지 압력을 받았는지는 애당초 판사들 내심의 영역입니다.

임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외부위원회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에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책임지고, 밝혀진 잘못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게 상처받은 일선 판사들, 신뢰를 잃어버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떻게?

사회자 신 대법관의 탄핵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탄핵사유에 해당할까요?

임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간단합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밝힌 요건을 토대로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신 대법관의 경우 우선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으로 법률을 위반했고, 특히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서 헌법을 위반했는데 이 부분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관과 법원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조항이며, 사법부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탄핵사유로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이 실질적 시스템으로 갖춰질 수 있다면 최선의 시나리오이겠지만, 신 대법관이 그대로 대법원을 이끌게 되면서 이번 사건에 용기있게 나섰던 일선의 양심있는 판사들이 징계를 당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어떻게 이번 사건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문책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기준을 배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서 재판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간섭을 금지해야합니다.

문 신 대법관만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법원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대책으로 이어져야하며, 이것은 국민과 국회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상황이나 사회여건상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은 법관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문제제기를 통해 내부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 법원에서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합의 안합니다. 판결문에서 토론과 합의에 나선 법관이 아닌, 주심 대법관을 명시하는 것이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있고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무슨 토론이 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임 문제의 본질은 역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제가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이 순리대로 잘 흘러가서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가야할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이후 지난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에 대해 '재판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을 특정판사들에게 집중배당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96건 가운데 25건이 일부 재판부 사이에 배당됐고 10건을 특정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에 올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발표에 대해 16일 당일 민변은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를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배당권을 단순히 사법행정권으로 보는 시각을 넘지 못했으며, 최소한의 공식적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진단과 해결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관계법 & 집시법

정리 _민변 입법감시TF

민변은 지난 해말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마이뉴스에 MB악법을 살펴보는 연속기고를 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정부여당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려 거듭 획책하고 있는 지금 이 연속기고는 슬프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중 노동관계법과 집시법에 관한 기고문을 여기에 싣는다.

연속기고 3 –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노동입법정책

2008. 12. 18.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보호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너무 보호장치가 많아 기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해야 고용이 많이 창출된다."며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파견 업종 확대, 최저임금 삭감을 2~3월에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2008. 12. 24.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근로기준 선진화를 명분으로 "고용 · 임금 ·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 합리성 · 명확성을 제고"하겠다며 "내년에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와 시간외 근무수당 할증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법안 – 누가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려 하겠는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의 주요방향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4년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주들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아니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 3년, 4년 등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2년 범위 내에서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제 4년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제정시 노동부는 2년간의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시정제도의 도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공언해왔으나 스스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해버림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매우 강력한 유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2009년 6월에 무더기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해고 사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조장하여 향후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짓이다. 4년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려 하겠는가?

나아가 파견법은 고용과 사용의 문리를 전제로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파견노동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떼먹는 것이다)를 합법화해주는 제도인 동시에 실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회피라는 탈법을 용인해주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유로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들은 아무런 노동법적 제약도 받지 아니한 채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파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해버리는 것이다. 결국 노동부가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용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미명 하에 중간착취의 대상 업종과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법안 –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볼모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위선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60세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액을 의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보호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너무 보호 장치가 많아 기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해야 고용이 많이 창출된다."며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파견 업종 확대, 최저임금 삭감을 2~3월에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릇 최저임금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 기준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즉 노동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을 앞세워 6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수습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마저 또 다시 감액하여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지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종소영세기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곤궁한 처지에 놓여있는 노동계층의 최저임금을 깎아줌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요 입에 풀칠하기 위한 밥상마저 빼앗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존마저 갉아먹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추진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반생산적이다. 최저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생산성이나 국가경쟁력을 운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 풍전등화에 처한 노동자의 권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정리해고 요건에서 "긴박한" 요건을 삭제하여 단순히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취임초기부터 외쳐왔던 "기업프렌들리" 정책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악 추진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한 정리해고 요건을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수정함으로써 종전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라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 할증수당을 1/2로 감축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법규마저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제한을 통한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확보, 그를 위한 힘겨운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주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세계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장시간 노동의 유혹을 불러올 시간외 할증수당의 감축이라는 마이너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이 싸워서 이룩한 해고제한규정과 근로시간단축법제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도 아니거니와 최저한의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도 아니다. 노동자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생산의 노예로 전락하고 언제나 절감되어야 할 비용 그 자체로 취급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자로부터 최저한의 근로조건마저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 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지 말라. 그리고 체제적인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노동자 적대적인 노동입법정책을 중단하기 바란다.

연속기고 4 –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지난 연말과 올초 정부여당이 통과시키려던 85개의 법안에는 소위 사회개혁법안이라는 13개의 법안이 들어 있는데, 사회개혁이라는 말과 그리 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개혁'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법안들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여 살펴보니,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집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 구습이나 악습을 타파하고 보다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는 과정이나 행위를 일컫는 것이 개혁이기에 개인적으로 위 법률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개악에 해당한다면 이 법안들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호기롭게 사회개혁법안이라고 부른 법안들이 과연 '개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악'에 해당하는지 집시법개정안과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보통 구습이나 악습을 타파하고 보다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는 과정이나 행위를 일컫는 것이 개혁이기에 개인적으로 위 법률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개악에 해당한다면 이 법안들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조항을 살피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보다 쉽게 주장될 수 있는 사유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집회, 이제는 꿈도 꾸지마!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 보관 · 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만 하면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조항을 살피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는 보다 쉽게 주장될 수 있는 사유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의 폭을 넓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평상시에도 교통혼잡 등으로 경찰차 등이 통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비상차량의 소통이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를 경찰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서, 경찰의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집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쇠파이프 등의 제조, 운반 등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은, 집회에 대한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될 수 있음에도 단지 위험한 물건을 제조, 운반만 하여 특별한 위험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회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위험한 물건을 제조, 운반하는 경우도 위험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는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잉한 입법임이 명백하다. 또한 위험한 물건의 예로 돌덩이 등 수많은 물건이 포함될 수 있기에 과연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 역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복면이나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고만 하고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복면을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복면을 착용한 자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 위험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스크 등을 쓰고 현금출납기 앞에만 서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또 시위장소 촬영조항에 대하여는, 경찰이 통고만을 요건으로 하여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정안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는 시한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조항의 경우, 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집회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현행 집시법이 워낙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말 '엄마 친구의 아들' 같은 집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집회를 제한하는 새로운 사유를 규정하고, 기존의 제한 사유는 강화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말 집회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집회할 거면 돈 좀 준비해 둬!

위와 같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회를 해야 한다면 집회자에게 새로이 기다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새로 입법되는 집단소송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일 것이다. 즉, 벌금 이외에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내부적 의사교환이나 친목을 다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수 등 위력을 통하여 전달하는 행위로서, 위력과 그에 따르는 불편주기가 집회의 개념적 본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결단으로 비록 그것이 불편을 끼치더라도 수인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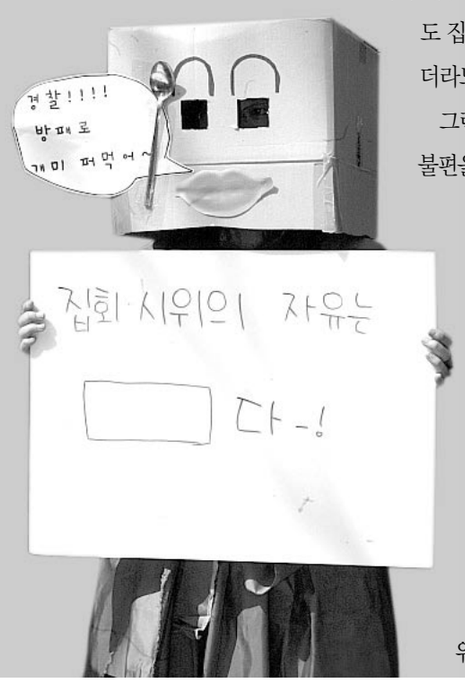

그런데 집단소송법은 집회에 의한 재산권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집회에 대한 '수인'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 그것도 헌법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인식보다는 집회가 가지는 개념적 특징인 '위력행사와 그로 인한 불편주기'에만 착목한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보다는 '터부시'하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를 그 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 보다 아래에 위치지우는 제도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소송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더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집회 참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회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이 통과된다면 "돈이 있는 자"만이 감히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다른 자유권적 · 정치적 · 청구권적 기본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총체적으로 가로막히는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 점에서 그 의제가 헌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폭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저항권 행사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

집회를 두려워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길!

기능적 측면에서 집회와 시위는 표현의 수단 중에서도 자본에 포섭되기 십상인 신문매체나 사영방송매체 또는 정치권력이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노리는 공영방송매체와 비교할 때, 거리와 광장에서 맨몸을 부대끼며 맨입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민중적이며 서민적인 원초적 표현방법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다른 자유권적 · 정치적 · 청구권적 기본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총체적으로 가로막히는 경우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 점에서 그 의제가 헌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폭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저항권 행사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집회와 시위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발현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하는 편협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성찰없이 집회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기록된 단 두 사건(3.1운동, 4.19혁명)이 한국 최대의 집회사건이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만을 봐도 집회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던 어떤 정권도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집회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과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집시법 개악안과 집단소송법의 입법을 중지,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적(敵)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글 _**박경신** 고려대 교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근 신영철 전 서울지방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2009년 현재 진보의 적은 사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촛불시위 및 post – 촛불정국의 분쟁을 정부 여당과의 그것으로 규정하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입법권과 행정권을 넘겨준 지난 대선과 총선의 패배를 아쉬워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과 사법부와의 싸움이다. 필자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의 게시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관해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24일자에 기고하였던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수정 전 제목 : 견해표명 하였다고 감옥에 가는 나라)' 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1)]

> 견해의 표명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과 같다. 2008년의 긴급조치는 독재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히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현재 사법부의 '연대보증' 없이 이명박 스스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곤 없다. 선거는 산술적인 다수를 가리는 게임이며 언제라도 이길 수도 있고 질

만 있다면 절대로 성사될 수 없다. 이들 정책의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제압해야 하며 법치주의 국가의 기틀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이상 반대 목소리의 제압은 '합법성'의 절차와 포장을 쓰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 즉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를 제약하는 모든 행정권과 입법권의 행사는 이론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실제로 조용한 다수가 '어쩔 수 없지' 라고 자조하며 포기하거나 '법이 그랬나?' 라고 의아해하며 결과를 수인하는 시점은 이명박 정부의 조치나 정책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사법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공공성 보호를 위한 항쟁을 선포하였던 KBS의 정연주 사장이 집무실을 비운 날이 언제인가. 법원이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날이다. 조중동이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매도하는 것에 격분한 국민들이 그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쏟아 붓던 전화통화가 잦아든 시점이 언제인가. 검찰이 '외국에서는 2차 불매운동이 위법이라 카더라' 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벌이던 카페의 개설자와 운영자를 구속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점이다.

정부 여당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탄압은 기본권의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의 시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가 기본권의 침해를 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번 싸움은 정부와의 그것이 아니라 사법부와의 그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왜 보수적일까?

촛불재판에 대한 법원지도부의 관여는 사법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광고주 불매운동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 지금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판결 및 수사행태도 자신들이 특권층에 속해 있고 이명박 정권이 촛불시위가 보여준 대중들의 '공포스러운 힘'으로부터 특권층을 계속 보호해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보수성은 사법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2008년 7월 2일 대한변협은 '보수언론 광고 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방통심의위의 법률해석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게시글 삭제 등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주장이다.

1) 2008년 8월 25일 한겨레 칼럼.

헌법이 표현(speech)과 행위(action)를 구분하여 표현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면 행위는 금지되더라도 표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의 반영이다. 즉 표현은 그 내용이 불법행위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변협은 도리어 합법적인 표현물이라도 범죄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익 차원'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납세제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납세거부자들에게 정당화 논거를 제시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있을 것이고 혼외정사를 미화하는 영화는 간통죄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은 '사법부가 왜 보수적일까?'가 아니라 '왜 법조계가 보수적일까?'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위에서 암시하였고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답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법원을 구성하는 법률가들의 배경을 다양하게 만들고 이들의 특권의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변호사 정원제 아래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특권의식의 세례를 받고 나오면 중요한 시점에서는 법과 원칙을 포기함은 물론 누구의 편도 아닌 자신들의 편에만 서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자신과 같은 모임이 10개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큼 판검사 후보자(즉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도록 사법개혁에 앞장서는 일이다.

사대주의 '법학'의 문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필자가 속한 직업군인 법학교수는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즉 사법개혁 만큼 법학교육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것인데 나는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아래에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법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활자화를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검열 금지' 모두 외국에서 직수입한 개념들인데 사법시험에서 수업시간에서 줄줄 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원리인지를 알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금 자세하게 칼럼을 썼지만 여기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교사(incitement)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2], actual malice의 올바른 번역은 '실제 악의'이며[3], 금지되는 '검열'을 '사전검열'로 좁게 해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것만 밝혀둔다[4]. 현실과 분리된 법학 하에서 이 개념들은 모두 "교과서에 있는 좋은 얘기들"일 뿐 정작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법과 법학을 구분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는 전공분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자기의 분야만 알고 있을 뿐 조금만 여러 분야에서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공백이 있다. 공정거래법, 헌법, 노동법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 가진 법학자라면 '2차 불매운동'에 대한 혼선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대주의도 큰 문제이다. 모욕죄,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법 제도인데 단지 일본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법해석을 할 때 이런 사정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외국을 따라야 하느냐'고 항의한다. 일본은 외국이 아닌 모양이다.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방심위원인 모 법학교수의 발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날 그 교수는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필자가 7월 16일 한겨레 칼럼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경우 2차 보이콧은 노동조합이나 기업체들의 그것과 같이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소비자운동은 폭넓게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5]. 실제로 위 발언을 하였던 교수도 7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방심위는 재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방통심위의 명백한 법적 오류에 대해 소위 '헌법전공' 교수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혹자는 '법학교수 일반은 그렇고 당신들 몇몇만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민변에 대해서도 '변호사 일반은 그렇고 민변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법학개혁이 사법개혁 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2) 2008년 8월 25일 한겨레 칼럼.
3) 2008년 7월 27일 경향신문 칼럼.
4) 2008년 8월 1일 한겨레 칼럼.
5) 2008년 7월 16일 한겨레 칼럼.

사법개혁은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많은 진보적 변호사들이 이런 때일수록 '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법치의 궁극적 한계 때문에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나 사법부를 탈특권화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법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법부와 사대주의와 실증주의에 사로잡힌 법학 사이에서 우리는 '나쁜 법'만을 경험해왔다. 물론 최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법질서'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법질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더 '법으로의 몰입'이어야지 '정치로의 도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곡되기 전의 법질서는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이다.

법질서란 무엇일까? 법은 공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기도 한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제한한다. 또 법에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 있고 헌법은 여러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은 입법부가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법성을 다툴 수도 있다. 그리고 법관들은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을 해석할 때 최대한 헌법에 합당하게 해석하도록 즉 최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법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측이 오히려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예를 들어보자. 임채진 검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질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 북한에 대한 지지도 우익에 대한 반대도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며 도리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인 사상의 자유가 보장하는 다양한 사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 말은 "불교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는 사상을 가진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자유와 재산을 뿌리 채 뽑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말임은 물론 반 헌법적인 것이며 불법적 발언이다.

방심위의 예를 들어보자. 우선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위헌적이지만 위원회 자신의 잘못은 아니니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자. 지난 1월 2일 김문수 지사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다음 아고라 – 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위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김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졌다. 김 지사는 방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하였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임명한 교수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방심위는 삭제결정을 내렸고 다음은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

'법질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공인이 한 말을 문자 그대로 게재한 위 게시판은 어떤 법해석 하에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망국적 발언' '사퇴' 등의 의견이 곁들여졌고 다른 네티즌들이 댓글로 사퇴제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표시를 한 것의 의견의 표명이다. 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정치인의 실언을 국민들이 규탄할 수 없다면 도대체 표현의 자유는 무슨 뜻이란 말인가. 결국 방심위의 삭제결정은 불법적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겠다고 난리이다. 모욕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면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다. 또 모욕죄는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보통 법원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부적 조건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신 말이 초딩같다.'는 말을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것은 괜찮아도 학생이 교수에게 하는 것은 유죄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존재하여왔던 모욕죄의 존재 자체가 한나라당의 잘못은 아니며 '체면'을 소중하게 생각해온 유교문화권의 유산이라고 치자. 하지만 한나라당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반의사불벌죄'로 만들어 현재의 모욕죄를 더 처벌하기 쉽게 만들겠다고 한다.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주위의 차별과 괴

롭힘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왜 사니, XXX야' 라고 하는 것은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죽일 XXX' 하는 것을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애인, 소수 민족만 차별적인 언사로부터 보호하는 '혐오죄' 를 두고 있을 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모욕죄를 두고 있지 않다. '법질서' 의 내용을 보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인격살인을 막는다면서 혐오죄를 만들지 않고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등의 활성화 방안에 심취하는 것은, 부자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잊어먹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불침번을 서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신고를 해도 수사를 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는 성공한다면 사회적 지위에 의한 차별이며 우리나라 헌법을 명백히 위배한다.

사법부는 친정부 신문들의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해 줄 것을 제안하는 글들이 게시되는 카페의 운영자들 24명에 대해 그 글들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주들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불통시키고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업체들이 공개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행위인 것은 말할 것도 그와 같은 전화를 하자고 독려의 글을 올리는 것은 더욱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행위이다. 이것은 마치 월드컵축구 대회기간에 "응원을 위해 시청 앞으로 아무나 모여라"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너무 잘 써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 나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자 그 글을 쓴 사람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원의 판시는 앞으로는 글을 너무 잘 써서는 안 된다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법질서' 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깊이 파면 '법질서' 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검찰, 방심위, 한나라당, 법원이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법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많은 가치들과 규범들을 담고 있다. 법조인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법조계의 특권층화를 중단되고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 진정 독립적인 사법부 – 자신의 정치적 지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법부 – 가 출현할 수 있다면 이 가치와 규범은 빛을 발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더욱 법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는 '법질서' 를 외치는 자들에 대항할 때는 우리는 이제 법에 기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의 욕망은 항상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며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복적 담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지배자들을 기속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치는 '이익다툼' 을 '가치투쟁' 으로 만드는 것

이에 대해 법치에 비해 정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 "김대중 노무현은 보수층과의 결탁을 통해 정권이 유지되어 개혁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그 이후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치도 바뀔 것' 이라고 하며 정치에 기대를 건다.

사람들이 정치에의 관심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실정치가 '밥그릇 싸움' 이 아니라 '가치의 투쟁' 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김호기 교수가 쓰는 '욕망의 정치' 와 '가치의 정치' 가 이에 대응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우리는 한국의 제도정치의 후진성을 한탄하며 '진정한 보수' 의 출현을 고대하여왔다. 사실 기억을 더듬어보면 2005년 11월 '뉴라이트' 가 출현했을 때, 2007년 말 과거 군사 쿠데타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던 박근혜를 누르고 이명박이 승리하였을 때, '수구보수' 가 아닌 '실용보수', '합리적 보수' 의 출현으로 우리도 '우아한 정치' 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그 기대는 두 번 다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2009년 2월 "합리적인 보수와 책임 있는 진보가 협력하여 … 일종의 거국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백낙청 선생의 요청을 듣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 보수를 기다려온 것은 진정한 정치는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투쟁이지 이익집단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투쟁의 주 전선은 식민지와 독재정권의 역사 속에서 유래한 특권을 지키려는 집단과 특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었지 가치들 간의 투쟁이 아니었다. 2009년 2월, 촛불시위를 지켜본 한 자칭 보수적인 네티즌의 말이다. "현재의 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다. 수구와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 쇠고기 반대집회를 반대했던 이른바 '보수'라는 단체는 거칠게 이야기해서 친미 매판 수구세력이다 … 어느 나라 보수단체가 자국의 국기와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집회하는가?".

이미 2005년 5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연세대 리더십 특강에서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갖다 놔도 보수는 나누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더 이

전에는 1997년에 출간된 〈보수주의자들〉이라는 책은 김대중, 이건희, 김문수 등을 포함한 10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었는데 이 책은 〈과연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는가〉라고 서론에서 묻고는 대체로 '없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과연 합리적인 보수는 존재하는가? 보편적으로 세계의 보수진영들이 내세웠던 가치는 전통, 국가, 가족, 법질서, 생명, 경제발전, 법질서, 자유 등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세계 곳곳에서 건설공사를 하다 문화재가 발견될 때 또는 자원개발이 전통생활양식의 파괴를 수반하게 될 때의 긴장상태에서 보수진영은 항상 전통의 반대편에 서왔다. 보수진영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은 항상 자신들만의 전통이었다. 또 보수정권은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군사공항의 활주로를 틀고 있다. 애국심을 부추기며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부시정권의 실제 목표는 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석유산업과 군산복합체의 보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가족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혈연관계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출산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지만 이를 축소하려는 세력 역시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진영이다. '법질서' 를 강조해왔던 조중동은 신영철대법관의 재판개입 논쟁에서 놀랍게도 독립을 요구하는 법관들을 '좌파' 로 밀어붙이고 있다.

보수진영은 사형제를 요구해왔고 기아선상의 사람들에게도 책임원칙을 제기하여왔다. 보수진영이 생명을 중요시할 때는 자신의 우주관과 가치관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위해 매우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는 개인을 위선에 굴종하도록 억압하려 할 때뿐이었다.

세계사 속에서 보수진영은 절대로 보편적인 경제발전을 원하지 않았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을 저해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여받은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물론 그렇다고 국가사회주의가 경제발전을 잘 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철만 되면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불법체류자 추방을 외치면 보수표를 집결시켰지만 경제인이라면 모두 안다. 저임금으로 3D업종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불법체류자들이 아니라면 미국경제는 불황에 허덕일 것이라는 것을.

보수진영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왔던 쪽은 항상 보수진영이었다. 도리어 볼테르의 말처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미국의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와 같은 진보진영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가치들을 지향하는 순수한 '보수적인' 개인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것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보수주의의 본질이었다. 보수주의가 세력을 형성할 때 그 리더들은 항상 원래 내세웠던 가치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왔다. 보수주의는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동시대에서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일 뿐이다.

'합리적 보수' 는 진보진영이 정치를 '이익다툼' 이 아닌 '가치의 투쟁' 이라는 믿음 하에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보여진다. 즉 운동으로서의 보수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보호에 있어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진보진영은 당연히 이들을 더 수월한 협상대상으로서 바라고 있을 뿐이다. 진보진영이 소위 '합리적 보수' 라고 꼽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진영에도 친숙한 북구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즉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 강력한 사후재분배를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합리적인 보수' 는 오지 않는다. 현실정치는 앞으로도 '이익다툼' 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정치를 진정한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정치는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과의 투쟁이 아니라 현실정치를 가치의 투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과 이익집단의 다툼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간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보집단은 '가치의 투쟁' 이 아니라 '이익다툼' 에 빠져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하며 항상 자신들의 싸움은 '이익다툼' 이 아니라 '가치의 투쟁' 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변혁이 아니다. 구태여 도식화해서 표현하자면 부자들이라는 '지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변혁이다. 이를 망각한 진보는 지금까지의 싸움으로 얻어낸 지위나 역사의 우연으로 얻게 된 지위에 연연하게 된다. 그 지위는 임금으로 또는 정원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련은 정치를 '욕망의 정치' 로 만든다.

법적 싸움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나마 가치의 투쟁이다. 한인섭 교수의 말처럼 '누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사법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정치이다. 진보적인 집단은 '가치의 투쟁' 으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정치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집단의 자성적인 참여가 결정적이다. 미국의 인종차별 싸움에는 백인변호사들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전선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아니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 싸우는 민변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

농민시위 국가배상 판결문

이 판결은 2005년 11월 쌀수입개방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의 과잉시위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고 전용○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경찰이 시위 진압시 안전한 해산위주로 시위참가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경찰장비는 필요 ·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 · 최소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 전용○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경찰이 사진채증을 하였을 뿐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30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100689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신경수, 정웅기, 소정수, 김문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박준범
변론종결	2008. 10. 28.
판결선고	2008.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08.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국농민대회의 개최 및 진행상황 등

1) 국회의 쌀 협상안 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이하 '전국농민대회'라고 한다)가 2005. 11. 15.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되었다.

2) 전국농민대회의 개괄적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13:40경 1만 여명의 농민들이 문화마당 내에 모여 14:00경 전국농민대회 행사가 시작되었고, 15:40경 집회 종료 후 시위대가 문화마당 6문을 통해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하였다.

나) 16:10경 국민은행 앞에 경찰이 설치해 놓은 차벽 앞에 도달한 시위대는 차벽 지점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게 깃대, 물푸레나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은 16:18경부터 살수차로 살수를 시작하였고, 16:24경부터 차벽차량 앞으로 경찰이 진입하여 시위대와 격돌, 경찰은 시위대를 문화마당 6문 밖 산업은행 앞 조형물까지 밀어냈다(1차 진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방송요원인 소외 김○라 경장은 16:10경부터 30여 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시위대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방송을 하였다.

다) 16:30경 경찰이 잠시 후방으로 이동하자 시위대가 다시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진격하며 경찰버스를 방화하였고, 경찰들은 다시 진격하여 17:20경까지 시위대를 문화마당 쪽으로 밀어내며 밀려나는 시위대를 방패와 곤봉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진압하였다(2차 진압).

라) 시위대는 포스코공사장 차벽차량을 방화하고 보도블록 투척하는 등 문화마당 6문을 중심으로 경찰과 대치하였고, 17:23경 경찰은 문화마당으로 진입해 시위대를 1문 앞까지 밀어내고 6문 방향으로 철수하였으며, 시위대는 6문으로 철수하는 경찰에게 농구골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들을 공격하였다(3차 진압).

마) 18:00경 소강상태에서 경찰은 검거를 위하여 전경들을 6문 부근에 대기시켰다가 18:17경 12개 중대(1기동대의 3개 중대, 특수기동대의 3개 중대, 기동단 경비과의 3개 중대, 4기동대의 3개 중대)가 6문을 통하여 문화마당 내로 진입하여 1문 방향으로 진격하며 시위대 해산 및 검거를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다(4차 진압).

3) 위와 같은 시위진압에 경찰은 28개 대 88중대 및 자서 426명 등 약 9,000여명이 투입되었다.

4)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부상당한 경찰이 218명, 농민이 113명, 기자가 2명이고, 경찰차량 3대 전소, 2대 일부 소훼 등 9,5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농민회 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힌 농민들의 숫자만 150여명에 이르는 등 600여명의 시위대가 부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나. 전용○의 시위참가 및 부상

1)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이던 소외 망 전용○은 2005. 11. 15. 지회 총무 소외 이병○ 등과 함께 10:10경 보령시 주교면을 출발하여 13:30경 여의도 문화마당에 도착하여 전국농민대회 행사에 참석하였다.

2) 전용○은 전국농민대회 행사가 이루어지던 무렵에는 문화마당 6문 옆 매점 부근에서 집회 상황을 지켜보았고,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자 1선에 있던 전남농민회 뒤 2선 보령농민회 대열에서 행진에 참여하였다.

3) 시위대가 차벽 지점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16:19경 전용○은 장대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가 물대포를 맞고 뒤로 물러섰으며, 이후 상여 후미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위 상황을 관망하였다.

4) 전용○은 16:30경 및 17:35경 극심한 대치상황에서도 시위대 뒤쪽 또는 문화마당 6문 인근에서 시위를 관망하고 있었다.

5) 이후 전용○은 18:18경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에서 6문 방향으로 약 10~20m 떨어진 지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김완구 경장이 찍은 사진), 이를 발견한 전국농민대회 참석자인 화순군 농민 소외 배○, 제주 농민 소외 정태○, 김장○ 등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한 후 18:27경 전용○을 문화마당 내 1문 입구 쪽에 설치된 무대 뒤로 옮겼다(민중의 소리 기자가 찍은 사진).

6) 무대 뒤쪽으로 옮겨진 전용○은 18:35경 정신을 차렸고,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한화증권 방향으로 걸어갔다.

7) 전용○과 같은 보령농민회의 농민 소외 김경○는 19:00경 한화증권 건물 앞 가로수 앞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앉아 있는 전용○을 발견하고 전용철을 부축하여 금융감독원 옆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에 태웠고, 전용○은 그 버스를 타고 21:00경 여의도를 떠났다.

다. 그 이후 전용○의 사망

1) 전용○은 보령시로 귀가하는 길에 정차한 서산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이병○의 부축을 받고 버스에 다시 승차하였고, 이후 버스 안에서 구토를 하였다.

2) 전용○은 2005. 11. 16. 점심경 중국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던 중 구토를 하였으며, 2005. 11. 17. 17:00경 주교면 청년회관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이병○ 등은 17:30경 전용○을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3) 보령아산병원에서 전용○을 진찰한 의사 소외 최선○이 시티(CT) 촬영 결과 뇌실질출혈 증상이 있어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최진○도 같은 소견을 보여 20:40경 전용○을 충남대병원으로 전원시켰다.

4) 전용○은 충남대병원으로 전원되어 의사 소외 이규○ 등으로부터 2005. 11. 18. 및 2005. 11. 23. 두 차례에 걸쳐 두개골천공술 및 두개골절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5. 11. 24. 06:30경 사망하였다.

라. 상속관계 등

1) 전용○의 사망으로 그 재산은 누나들인 원고 전소○, 전춘○, 형인 전용○, 동생인 전용○과 형 소외 망 전정○(1997. 12. 29. 사망)의 처 원고 이영○, 그 자녀들인 원고 전옥○, 전창○ 및 형 소외 망 전용○(2001. 6. 29. 사망)의 처 원고 임정○, 그 자녀인 원고 전민○가 공동으로 상속 및 대습상속하였다.

2) 전용○은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88-20에서 형수인 원고 이영○, 조카들인 원고 전옥○, 전창○와 함께 거주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2, 14, 15, 1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경찰들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과실로 전용○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시위진압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전용○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141,194,746원, 장례비 300만 원 및 경찰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한 전용○의 사망, 그 사망 직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왜곡 ·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전용○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8억 원(전용○ 5억 원, 원고 전소○, 전춘○, 전용○, 전용○ 각 5,000만 원, 원고 이영○, 전옥○, 전창○, 임정○, 전민○ 각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들이 전용철에게 직접적으로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경찰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용○이 경찰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의 고의 · 과실 및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용○은 당시 간비대증 및 고도의 간경화증을 앓고 있어 당시 노동능력상실률이 82%에 이르며 가동연한까지 생존할 수 없는 가능성도 많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야 하고, 전용○이 과격한 폭력과 방화행위가 이루어진 시위에 참가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50% 이상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툰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전용○에 대한 부검 및 그 결과

가) 보령경찰서는 2005. 11. 24. 사건개요를 '전용○이 2005. 11. 15.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후 같은 날 22:30경 집으로 귀가 중 쓰러져 보령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충남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고 밝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라고 한다)에 부검의뢰를 하였다.

나) 보령경찰서 수사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에는 사건개요가 '전용○이 2005. 11. 16. 집 앞에서 쓰러져 보령병원으로 후송, 뇌출혈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 퇴원 후 이송 중 사망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 전용○은 지난 11. 15. 서울 농민대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와 집에서 잠을 자고 11. 16. 집 앞에서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과수는 2005. 11. 24. 사인규명을 위하여 전용○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과수 중부분소 법의학과 전문의 이상○, 서중○은 2005. 11. 15. 전용○의 사인은 '두부손상(Head Injury : 두개골골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경막하출혈 등)' 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위 국과수 부검보고서의 '참고사항' 에서는 '두부손상은 왼쪽 후두정부에 외력이 작용한 데 반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손상은 양쪽 전두엽 및 오른쪽 측두엽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힘이 작용한 동측충격손상보다는 힘이 작용한 반대쪽에 형성된 대측충격손상이 강하게 형성된 소견이고, 이는 전도, 즉 정지된 물체에 머리가 이동하다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두부손상' 으로 보인다고 손상에 대한 법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 위 부검 결과 전용○의 왼쪽 후두정부에서 4.5 × 3.5㎝ 범위의 가피로 덮여 있는 표피박탈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눈 부위에서 6.0 × 5.0㎝ 범위의 피하출혈, 왼쪽 눈 부위에서 5.0 × 3.5㎝ 범위의 피하출혈이 관찰되었는데, 양쪽 눈 부위의 피하출혈의 경우 눈 부위에 직접 외력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전두개와 골절에 의한 이차적인 출혈의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 또한 위 부검 결과 왼쪽 심실벽 비후를 동반한 약간의 심비대증이 관찰되었고, 간이 무게 1,880gm으로 비대하여 고도의 간경화 소견이 있으나, 이들 질병이 직접 사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이라고 한다)는 위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그 사인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는 '대측충격손상은 외부의 가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힘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가격받은 반대편 뇌에 대측충격손상이 있을 수 있다' 고 하며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을 전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목격자의 진술 등

가) 18:27경 쓰러져 있던 전용○을 옮긴 사람 중의 한 명인 화순군 농민 배○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농구 골대를 밀고 투석전을 벌이고 난 후 어두워지고 있을 무렵 전경들이 6문 쪽에서 1문 쪽으

로 진격하였는데, 당시 전용○이 양팔을 수평 정도 높이로 벌리고 전경들을 막아서는 자세를 취했고, 이에 전경들이 전용○을 방패로 세 번 내리찍었으며, 첫 번째 방패로 찍었을 때 전용○은 넘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동작에 넘어졌으며, 넘어진 전용○에게 전경들이 방패 및 곤봉으로 가격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나)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였던 서울산업대학교 학생들인 소외 임도○, 김도○은 '18:09경 국기게양대 앞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소외 이교○을 만났는데, 그 직후 6문 입구 쪽에 전경들이 정렬해 있다가 함성 소리와 함께 문화마당 내로 진격하였고, 선두 대열이 지나가고 난 후 매점 쪽을 보니 시위대 중 한 명이 쓰러져 있었으며,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전경들이 쓰러져 있는 농민을 향해 방패를 찍거나 곤봉으로 내리치거나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고, 임도○, 김도○과 함께 있던 같은 학교 학생인 소외 정인○은 '농민 중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경들 중 선두 일부는 그 농민을 지나친 직후였고, 선두 바로 뒤쪽에 있던 전경 일부가 쓰러진 농민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학교 선배로 회사원인 이교○은 '임도○을 만난 지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6문 입구 쪽에 있던 전경들이 일제히 문화마당 내로 진격하던 상황에서 그 진로에 농민 한 명이 서 있었는데, 전경들이 그를 피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상황 속에서 그 농민이 쓰러졌으며, 후미에 있던 전경은 쓰러진 농민을 그냥 밟고 지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다) 18:27경 쓰러져 있던 전용○을 옮긴 사람들 중 일부인 정태○, 김장○은 '18:00경에서 18:30경 사이 국기게양대에서 다른 제주도 여성농민회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전경들이 갑자기 국회 방향에서 무대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고, 당시 좌측에 있는 부대는 국기게양대에 바짝 붙어 지나갔으며, 부대가 지나간 다음 국기게양대로부터 국회 방향으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숨을 쉬나 확인을 한 후 119에 연락을 하도록 하였으며, 전용○을 무대 뒤쪽으로 옮겼다' 고 진술하였다.

라) 18:18경 쓰러져 있던 전용○의 사진을 찍은 서울 성동경찰서의 김○구 경장은 '당시 이동하는 부대 옆에서 6문에서 1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전용○이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앞으로 엎어져 있던 전용○을 사람들이 뒤엎은 후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 다시 6문 쪽으로 돌아가 그 이후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1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소외 문경○의 진정을 접수하여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2005. 12. 23.까지 조사를 한 결과 2005. 12. 26. '전용○의 부검 결과, 목격자

들의 진술, 채증자료들, 당시 경찰 부대의 이○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전용○의 사망은 제1기동대 제1중대가 문화마당 6문 근처 매점 쪽에서 1문 쪽으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위 중대 소속 성명미상의 대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 12. 27. '전용○과 소외 홍덕○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대하여 유가족 및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어 응분의 책임을 지우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고, 그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취지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였다.

5) 전국농민대회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이○묵 서울경찰청장은 2005. 12. 27., 허○영 경찰청장은 같은 달 29. 각 사표를 제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우선, 전용○이 2005. 11. 15. 전국농민대회 직후 시위 현장에서 피고 소속 경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전용○이 전국농민대회 행사 이후 18:18경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 이전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시위에 참여하였던 점, ② 전용○이 쓰러진 채 발견되기 직전인 18:17경 문화마당 내 전용○이 쓰러져 있던 장소 부근으로 경찰력이 일시에 투입되어 진격하였던 점, ③ 사고 당일 16:10경 이후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면서 시위가 매우 폭력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밀려나는 시위대를 향하여 방패를 들어 올려 가격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찰 모두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점, ④ 전용○이 18:18경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가 약 15분 이후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아 머리에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구토를 하는 등 뇌손상의 징후를 보이다가 3일 후인 2005. 11. 18. 수술을 받고 2005. 11. 24. 사망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전용○이 다른 이유로 머리에 손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점(경찰은 전용○ 사망 직후 전용철이 집 앞에서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⑥ 부검 결과 전용○은 정지된 물

체에 머리가 이동하다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 점 등에다가 ⑦ 전용○이 경찰의 방패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배○의 진술, ⑧ 전용○이 쓰러진 후 경찰들이 쓰러진 전용○을 방패나 곤봉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임도○ 등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전용○은 2005. 11. 18. 18:17경 피고 소속 경찰들이 문화마당 6문 쪽에서 1문 쪽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피고 소속 경찰들의 전용철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경찰장비' 에 포함되는 경찰장구 중 하나인 경찰봉, 방패 등의 사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찰장구 사용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 규정(2006. 6. 29.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6조는 '경찰관은 불법집회 ·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 신체의 위해와 재산 ·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과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불법집회 · 시위에 있어서의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도 필요 ·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7조는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1조는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경찰장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그 취지 및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경찰권의 발동은 침익적 성격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개인의 권리침해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가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불법적으로 전개되는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도 그 시위에 참가한 인원, 시위현장의 규모, 시위방법의 난폭성 및 진압경찰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 ·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장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그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안전한 해산위주' 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시위가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1] 사고 당일 시위가 16:10경부터 매우 폭력적으로 전개되어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18:00경 문화마당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위대를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이 대기를 하다가 일제히 진격하던 상황이었던 점, ② 전용○이 쓰러져 있던 주변 바닥에 나무막대기 등 어떠한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거를 목적으로 진격하였던 경찰이 전용○을 검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시 전용○이 무기를 들고 경찰을 향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8:17경 전용○에 대해 가해진 경찰의 유형력의 행사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 · 최소한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③ 전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면 경찰은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채증을 하였을 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소속 경찰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무집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및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력의 행사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 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경찰들의 고의 · 과실 ·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으로,[2] 행정처분이 아닌 시위 진압행위라는 사실행위를 통한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참조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16:10경부터 경찰차량에 방화를 하고 돌을 던지는 등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모하였고 이에 경찰이 위 시각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위에 계속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② 전용○이 약 15분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의 두부손상을 입었고, 이후 구토증상 등이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에 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틀이 지나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가 지연된 점[3] 등 전용○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전용○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월 단위로 계산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기왕의 노동능력상실률 :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전용○의 부검 결과 간이 무게 1,880gm로 비대하여 고도의 간경화 소견이 있었던 사실, 부검에 참관한 인의협의 부검참관소견서에도 간경화와 비장 비대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간경화로 인하여 전용○의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상태였다면,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는 전용○의 간경화 등 기왕증이 사망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손해'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없었던 경우의 피해자의 상태와 불법행위 후의 피해자의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불법행위가 없었던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존재하고 있던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도를 고려함이 타당하므로,[4]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간경화로 인한 전용○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전용○의 부검감정서, 부검참관소견서를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을 한 결과 전용○의 간경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60%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맥브라이드 표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노동자의 경우 간경변증(肝硬變症)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 간비대, 경한 황달, 경한 오심, 구토가 있고 간혈적인 노무휴지를 요하는 경우 20%(XⅡ. A. 1.), ㉯ 간비대, 과민, 황달, 중증도로 심한 위(胃)증상, 오심, 구토, 복수는 없음, 주기적인 휴무의 경우 34%(XⅡ. A. 2.), ㉰ 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의 경우 58%(XⅡ. A. 3.), ㉱ 극심한 증상, 복부팽만, 복수, 부분적인 정맥폐색, 장기적인 휴무의 경우 82%(XⅡ. A. 4.)인데(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 ·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용○이 생전에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간경화의 자각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검감정서에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 등의 증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③ 간경화의 경우 그 증상은 환자의 체력 혹은 정신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같은 간경화 환자라도 어떤 환자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환자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 ④ 간경화는 간이식을 통하여 완치가 가능하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능성이 있는 질병인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을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였던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의사 소외 윤승○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정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증상을 관찰하고 진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간경화'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용○의 간경화는 그 간의 크기 등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나 심각한 자각증상이 없었던 상태로 맥브라이드표 XⅡ. A. 1.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간경화로 인한 전용○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20%로 판단된다.

● 기대여명 : 피고는 고도의 간경화로 인하여 전용○의 기대여명은 1.6년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고,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5]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심한 간경화가 있는 경우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 복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참조
3)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669 판결 참조
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불법행위 당시 기존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등 참조

수 및 간성혼수 등이 올 수 있고 간세포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평균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 ·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용○이 생전에 간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식도정맥류 출혈 등의 합병증 뿐 아니라 간경화의 자각증상 조차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검감정서에도 위 합병증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③ 간경화는 간이식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고, 합병증이 나타난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치료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전용○의 여명이 간경화로 인하여 상당기간 단축되어 전용○이 가동기간이 끝나는 2022. 2. 19. 이전에 사망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해야 할 피고 소속 경찰들의 부주의하고 위법한 시위진압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의 진상파악 과정 및 전용○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 측의 과실, 기왕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를 전용○에 대하여는 3,000만 원, 형제들인 원고 전소○, 전춘○, 전용○, 전용○에 대하여는 각 300만 원, 동거하고 있던 형수 원고 이영○, 조카 원고 전옥○, 전창○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 동거하고 있지 않던 형수 원고 임정○, 조카 원고 전민○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수
판사 최누림
판사 전아람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008. 4. 29.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 대하여 시청자인 원고들 2469명은 위 방송의 허위 · 왜곡 보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문화방송, PD수첩의 조○희, 송○준 PD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①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 ② 촛불 시위로 인한 교통의 불편 ③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주변인들과의 견해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정신적 고통의 내용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판결은 위 방송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수인한도 내에 있고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는 위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여론 수렴 및 형성 과정을 무시하는 부당한 소제기를 기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제16민사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 명단과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미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헌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엄기영
	2. 조○희
	3. 송○준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한상혁),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윤영환, 김진영)
변론종결	2008. 12. 23.
판결선고	2009. 2.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하 'PD수첩'이라고만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희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방송 당시 PD수첩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고 있었던 프로듀서이며, 피고 송○준은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타결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7. 31.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 이 사건 방송에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2)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3) 이 사건 방송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 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보도한다.

라.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 7. 16.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8. 8. 12.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방송의 공익성 ·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 · 왜곡된 이 사건 방송을 내보냈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 · 왜곡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1)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 공포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는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고, (2)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가 야기됨으로써 출퇴근시 교통의 불편을 겪었으며, (3)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원고들의 가정, 직장, 친지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차례로 살핀다.

(1) 이 사건 방송은 소위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므로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 공포심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

은 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방송의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이 사건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축산업자나 가공업자, 수출업자, 국내의 수입업자 등)가 매상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접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배상하여야 한다면 방송은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극도로 위축당할 것인 반면, 그러한 사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부정확한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 외면당하게 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⑵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퇴근시 불편 등의 피해는 불법적인 촛불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하였다거나, 그러한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⑶ 또한 이 사건 방송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타 신문보도 등이 다수 있었던 가운데 원고들이 가족, 친지, 동료들과의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방송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천지성
판사 배예선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일반 시민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지난 2007년 민중대회에서 거리를 지나고 있던 70대 시민을 시위대로 오인한 경찰은, 고무 보호장치 없는 방패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의 머리와 가슴에 부상을 입히는 폭력을 가하였다. 이에 당시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활동하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고 이후 민변에 연락을 하여 공익소송으로 국가배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하였지만, 경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 판결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문으로, "설사 시위참가자라고 하더라도 후두부를 가격한 행위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203899 손해배상(기)
원 고	이승○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진선미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김용한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0,00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1.부터 2009.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43,58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1. 11.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 부근에서 시위대와 전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의 전경이 방패로 원고

의 머리를 내리치고 원고를 발로 밟아, 원고에게 늑골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부상을 입은 원고를 구조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어긋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0,243,585원(= 치료비 2,182,680원 + 약 구입비 100만 원 + 35일 간의 개호비 2,060,905원 +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증인 김명○, 선지○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11.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 부근에서 시위장면를 구경하고 있었던 사실(원고에 대한 응급실간호기록지(을 제3호증의 1)의 사고 발생경위에는 '원고가 시청에서 시위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응급 상황에서 개략적인 사고 발생경위를 기재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퇴원요약지(을 제3호증의 2)에는 '원고가 시청 앞을 지나가던 중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원고는 만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던 점, 그밖에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않는다), 전경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졌고 늑골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가 후두부에 입은 열상은 전경들이 들고 있던 방패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전경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시위참가자로 오인하여 방패로 원고의 후두부를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져 늑골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위참가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경찰권의 발동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시위참가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후두부에 대한 방패 가격행위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경찰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실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명수, 선지영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경찰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합계 2,054,530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진료비 1,963,820원 + 서울성심정형외과 진료비 90,710원, 나머지 약 구입비 지출에 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2) 개호비

원고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입원기간이었던 2007. 11. 11.부터 2007. 11. 23.까지 개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아 합계 765,479원{= 58,883원(2007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3일}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3) 위자료

원고의 나이,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20,00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7.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선

“한국의 선진례를 참고하자”

글 _**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2009년 3월 20일 오후. 경도자유대학을 방문하다. 교토에서 일종의 시민대학을 개설한 것은 4년 전의 일이다. 초대 학장은 마스가와(益川) 교토대 교수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명사이고, 지금은 이케우치 사토루(池内了) 교수가 학장을 하고 있다. 부학장은 리츠메이칸 대학의 서승 교수. 서승 교수를 따라가니 구시가지의 상가 쪽에 조그마한 낡은 가옥을 약간만 개조하여 교사로 쓰기로 했다.

가옥은 20세기 초반의 것이라, 벽에 바른 흙이 부스러져 떨어질 듯한데, 벽에 나무판을 붙이고 바닥에도 나무판을 깔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고치고, 의자도 들어놓고, 방석도 깔고 하여 30여명이 방과 마루, 좁은 마당에 앉아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돈했다. 그야말로 소박한 풍경인데, 그래도 스크린도 달고, 파워포인터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는 인근 대학의 교수가 가장 많다. 모두 무료, 자원봉사이며, 1년에 한번 정도씩 한 강좌를 맡아 봉사한다. 주제는 시민적 관심사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회원의 회비와 약간의 후원금으로 사무를 운영한다. 이 시민사회단체(NPO)는 회원의 자주적 활동 및 관리에 의해 운영됨을 강조한다.

왜 이런 자유대학이 필요했는가? 대학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연결된다. 설립취지에는 거창하게도 UN인권규약(사회권규약)을 언급하고 있다. 동 규약 제13조 2항 C에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방법에 의해,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해, 능력에 따라 모든 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 규약에 비준했지만, 일본의 대학은 예외없이 물가수준보다 학비를 계속 인상시켜 왔기에 현재 일본의 대학 체제가 UN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동규약 2항 c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도 '자유' 대학을 개설하여, 지역과 시민에 열린 대학임을 표방하고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강좌는 대체로 금요일 오후 7시~9시에 열린다. 수강생은 30명 상한인데, 장소의 협소성 때문에 그 이상의 수용은 어려울 것 같았다. 참가비는 1회당 500엔을 자릿세를 받는다. 특별강좌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연속강좌의 형태로 열린다. ‘시민 미디어 강좌’, ‘시정(市政) 강좌’, ‘사업경영’도 있고 ‘재판원제도 강좌’ 등이 기획되어 있다. 오늘은 춘분/명절휴일이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강좌가 열렸다.

강의자료와 내용은 매우 충실했다. 다나까 히로시(田中宏) 용곡대 교수는 〈다민족공생, 나의 관점〉이란 주제로 40분 정도 강연했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두 번째는 교토대학의 오카 마리(岡眞理) 교수가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을 준비했는데, 둘 다 최고급의 전문가들이다. 뒤의 강의는 듣지 못하고 나왔다.

다나카 교수의 강의는 일본에서의 다민족의 상황, 다민족의 교육상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재일동포와 관련된 통계와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으로는 재일코리언(한국 · 조선)의 수가 가장 많아[1] 60만 명 정도 되고, 브라질인이 30만 명을 약간 상회하여 2위를 기록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재일코리언은 식민지시대의 대량이주(징용 포함)의 산물이지만, 브라질인들은 메이지 시대로부터 브라질에 이주한 일본계 브라질인에 대한 흡수정책이 1970년대 이후 이어져온 결과이다.

외국인학교 인가상황을 보면, 조선계가 총 73개인데 반해 한국계는 4개에 불과하다. 조선계는 독립된 학교를 유지하는 데 반해, 한국계의 대부분은 일본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브라질 학교가 많이 생겨 97개교에 이른다. 다만 조선계 학교의 취학아동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6만명 정도에서 3만5천 정도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 3만5천의 인원도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이고, 실제 학생수는 그보다 적지 않을까 추산된다고 한다.

다나카 교수의 전공은 일본과 아시아 관계이고, 저서로 〈재일외국인(신판)〉, 〈글로벌시대의 일본사회와 국적〉을 두고 있다. 그가 쓴 칼럼과 논문에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많았는데, 그 중 “참고로 하는 한국의 선진례”라는 언급이 눈에 확 들어왔다. 다음은 그가 쓴 기사의 한 인용이다[2].

“지방참정권의 개설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개방하는 것도 내외국인의 공생 시스템의 하나이다. 일본에는 1998년에 처음 정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10년 후인 지금까지도 법률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웃 한국에는 2005년 6월 법개정이 실현되어, 2006년 5월 통일지방선거에 최초의 한표가 행사되었다. 법개정이 실현된 2005년 가을 동경에서 회의한 열린우리당 당수의 발언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보다 내셔널리즘이 강한 국가인 고로, 참정권의 개방으로 내딛는 데는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한국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공존 · 공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1) 사실 재일동포의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추산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해방전 이주자, 제주4.3과 한국전쟁 전후 이주자도 있고, 동포 2세, 3세, 4세 중 얼마를 어떻게 포함할지도 어렵고, 국적 문제도 다양하게 얽혀있어서 그렇다.
2) 田中 宏, 踏み出したい外國人共生への一歩 : 参考となる韓國の先進例, 京都新聞, 2008년 12월 1일 18면.

인권침해의 방지

UN은 인권침해의 방지 및 구제를 위하여 국내인권기관의 설치를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일본에도 그를 위하여 인권옹호법안이 2002년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다음해 폐안된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에는 2001년 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했다. (일본의 법안에는 법무성의 외국(外局)으로 규정)

외국인의 연수 · 기능실습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본래의 취지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지만, "실질적인 저임금노동자로서 취급하고 있다"고 법무성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여권보관 및 외출금지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문제가 분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행하고, 2003년 2월 제도의 폐지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 등을 권고, 동년 7월 외국인고용허가법이 제정되어, 애매한 연수생제도는 폐지되었다. 일본에는 관계성청의 개혁안이 보고되었지만, 그 후에는 아무 진전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로를 취급하는 입법도 일본에는 없다.

2007년 5월 한국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한다. 중요정책의 심의 ·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정하고,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의 조항도 두고 있다.

한국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는 IC카드의 도입 등 새로운 외국인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공존 · 공생의 시스템을 추구하는다는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 가까운 한국방문의 기회가 있기에, 이웃나라가 취하는 방식을 보고 싶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 공생을 주제로 말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한국인식이었다. 일본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음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 내에 한국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참정권을 부여했고,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외국인연수생 제도를 폐지했으며, 나아가 주한외국인처우기본법까지 통과시켜 운용하고 있다고 그는 인식한다. 이러한 한국의 역동성을 부러워하면서, 일본이 따라야 할 선진례(先進例)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인권의 〈선진례〉는 그에 멈추지 않는다. 1997년 말 사형이 집행된 이래, 지난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격상된 것이 또 다른 좋은 예이다. 최근 10년간 사형집행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의 입장에서 부러운 현상이다.

최근 연쇄살인범 사건을 둘러싸고 사형집행의 재개에 대해 우려하는 내외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법과대학의 교수 132명이 〈사형집행의 재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 것이 국내의 새로운 흐름이라면, 대외적으로는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섞인 성명서가 전달되었다. 그와 함께 일본의 의원들로부터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이 전달되었다.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정지 계속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
회장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사무국장 호사카 노부토(保坂展人)

저희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은 1994년 4월에 설립되어, 일본의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활동을 국회 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존치국으로서의 일본의 형사행정 사정, 외국 각국의 형벌제도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과도 교류를 맺어 학습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7년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비상하게 자랑할 실적이며, 일본에도 본받아야 마땅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한국은 〈인권선진국〉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제 한국은 인권 분야에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크게 리드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귀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밑에서 유엔총회에서는 2년 연속 사형집행 정지결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부디 연이어서 사형이 없는 사회를 유지하시고 또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향하여 한걸음 내딛어 주셨으면 하고, 이웃나라 정치가로서 삼가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18일

이런 지적에 뭔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까지 축적된 인권선진화의 흐름을 역진시키려는 최근의 일련의 흐름에 우울함이 겹쳐진다. 몇십 년의 민주화를 통한 인권선진화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인권선진화의 흐름이 역류하지 않도록 새로운 분발을 다짐할 때이다. 한국의 〈선진례〉는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소중한 성과이기에!

민변의 활동

[3월 월례회]

소통의 문제,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정관용, 3월 민변월례회

정리 _**김영준** 회원

송호창 오늘 민변 3월 월례회 연사를 해주실 정관용 교수님은 케비에스 심야토론과 라디오 열린토론을 오랫동안 진행해오셨습니다. 흔히 손석희 아나운서와 같이 이야기가 되시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논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스타일이시라면, 정관용 교수님은 균형잡힌 진행의 교과서라고 이야기 되십니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데 등산객들이 "손석희씨 안녕하세요"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로 오해받으신거죠. (웃음) 얼마전 케비에스 심야토론을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시고 모 인터뷰에서 한국만큼 토론하기 힘든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토론은 내 생각을 바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새정부 들어서서 언론인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 그 피해자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관용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통해 본 소통이라는 주제로 민변 3월 월례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관용입니다. 등산할 때 손석희라고 한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사람 밖에 없었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송호창 변호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그 이후 저만 보면 손석희씨 손석희씨 이러는 겁니다. (웃음) 오늘 주제가 소통인데, 토론과 방송토론의 의의, 방송토론을 통해 본 우리사회 소통의 현주소, 소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진보와 보수의 모습들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할테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론의 정의와 마음가짐

여러분들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방송토론의 이미지를 지우시십시오. 토론이 뭡니까.

네, 첫 번째 분 개방적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두 번째 분. 커뮤니케이션.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세 번째 분.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 공감을 얻는 것. 다른 분. 네, 소통이라고 하셨네요. (웃음)

네, 거의 다 나왔는데요. 토론이라고 하려면 먼저 논제가 있어야 하고요, 논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토론의 3요소는 논제, 다른 의견, 합의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놓겠다. 2번 나의 생각을 바꾸겠다. 여러분들의 토론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네, 2번 두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1번이시네요.

그러면 한 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1번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 놓겠다. 2번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 어떠십니까.

네, 2번이 좀 늘어났네요. 어디가서 질문하던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1번이 절대다수. '잘못된' 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2번이 좀 늘어납니다. 사실은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신 것처럼 1번과 2번이 다 맞지요.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은 바꾸고 나의 잘못된 생각도 바꾸고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1번의 전제는 상대방은 틀렸다는 겁니다. 1번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방이 틀린 부분만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은 토론의 기본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건데요, 토론의 기본정의와 실제 여러분들의 토론하는 마음가짐이 상호 모순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방송토론의 이미지를 지우라고 했음에도 방송토론의 이미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만 생각한 것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안 변호사님과 송 변호사님이 민변에서 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안변호사님은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새로 중국집이 생겼는데 맛있다고 합니다.' 고 하시고, 송 변호사님은

토론이라고 하려면 먼저 논제가 있어야 하고요, 논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나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러는데 설렁탕 먹으러 갑시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토론을 한 거지요. 점심식사라는 논제가 있고 짜장면과 설렁탕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견을 고집해서 반드시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설렁탕을 먹어야겠다 이런게 아니고 서로 몰랐던 상대방의 정보를 알게 된 거지요. 그러면 설렁탕을 먹는데 돈은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겁니다.

작은 예지만 이런 데에도 평소 그 사람의 토론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꼭 자기의견대로 먹어야겠다는 사람은 다른 토론에서도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변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법률사무소내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 수천만번의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적이 되는거지요. 그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상대방은 선생님이 되는겁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는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2. 방송토론의 특징과 방송토론 잘 하는 법

네, 이제 방송토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방송토론은 일반토론과 다르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방송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여주기 위한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토론에서 양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토론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카메라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청자를 향해서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향해서 내 말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찬반이 대립하는 핵심현안일 경우 국민의견분포는 정상곡선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포곡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 (부동층) 40% 양쪽 30%가 찬성, 반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40%내에서도 찬성,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30%내에서도 찬성, 반대의 정도 즉 과격파와 온건파가 갈립니다.

방송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여주기 위한 토론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토론에서 양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토론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카메라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청자를 향해서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방송토론의 정치적 목적은 뭘까요? 네, 우리진영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시청자들을 설득해서 단 1%라도 자신의 진영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자신의 소속집단으로부터 호응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당이면 정당내에서 노조면 노조내에서 공무원조직이면 공무원조직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앞의 정치적 목적과 뒤의 정치적 목적은 상응할까요? 상반될까요?

답이 팽팽하게 나왔는데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앞의 적치적 목적과 뒤의 정치적 목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방송토론 나온 이의 정치적 목적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집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속집단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1%라도 시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방송토론에 나오는 이들의 정치적 포지션은 위 정상분포에서 30%내에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극단쪽에 있겠지요. 그런데 방송토론 이후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소속집단내에서도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방송토론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진영을 향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호가 중요하고 말펀치가 환영받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언론이 말펀치를 기사로 쓰고 반대진영의 언론이 또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네티즌들이 위 기사들을 퍼나르고 화제가 되고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정작 설득의 대상은 자신의 진영의 30%가 아니고 중간층의 40%입니다. 자신의 진영은 어떤 경우에도 의견을 바꿀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간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긴가민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간층들은 현안에 대해서 보통 잘 모릅니다. 한반도 대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중에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개 잘 모릅니다. 중간층 내에서도 적극적 무관심층이 있는 반면 관심은 있는데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의 정도가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후자의 층이 방송토론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런 중간층을 대상으로 어필하는 방법은 자신의 진영에 대해 어필하는 방법과 다르고 상당히 고도의 스킬을 요합니다. 예로 간통죄 존폐논란의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통죄 존속에 찬성하시는 분들? 없으시네요.

중간층을 대상으로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성도덕도 지켜야 합니다. 아직 약자인 여성들 보호해야 된다는거 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간통죄가 과연 정말 그 기능을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선생님과 저의 견해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간통죄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이혼시에 더 높은 위자료를 주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웃음) 그럼 제가 간통죄 존속론자가 되겠습니다. 간통죄에게는 현실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을 보호하고 둘째, 무너져가는 성도덕을 지키고 셋째, 아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간층을 대상으로 어필하는 방법과 자신의 진영에 어필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층을 대상으로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성도덕도 지켜야 합니다. 아직 약자인 여성들 보호해야 된다는거 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간통죄가 과연 정말 그 기능을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선생님과 저의 견해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간통죄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이혼시에 더 높은 위자료를 주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좋은 목적을 다 취하는 겁니다. 논제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지요?

그러면 자신의 진영에서 어필하는 방법을 볼까요? “아니 당신 조선시대에 사세요? 아예 삿갓 쓰고 도포입고 다니세요. 간통죄가 성도덕을 보호한다는데 러브호텔 가보세요. 빈 방이 없잖아요. 여성을 보호한다고요? 요새 아줌마들이 애인두기가 유행인거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말펀치가 많습니까 자극적인 발언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사화되고 인터넷에서 퍼나르고 검색순위 올라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처음에는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계속되면 역작용이 있습니다. “쟤는 맨날 화만 내.” 자신의 소속집단의 과격파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잡아야 되는 40%의 중간층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방송토론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런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나아지고는 있으나 –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 아직도 자신의 진영을 향해서 과격하게 발언을 하고 호응을 받는 데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설득하려면 내가 설득당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완강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의 소통문제를 보겠습니다.

3. 우리 사회 소통의 현주소

서울대 사회학과의 한상진교수가 한국, 독일, 스웨덴, 칠레, 폴란드, 남아공, 터키 이렇게 7개국을 대상으로 각나라 국회의원 100명에게 각 나라의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에 대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꼴찌를 했습니다. 한국 46. 46점. 여기가 다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남아공도 62점이 나왔습니다. 여야간의 소통능력이 제일 나쁘게 나왔어요. 39.3점 언론인들이 평가한 것이 32.8점 일반국민들이 평가한 것이 31.1점이 나왔습니다. 정치체제의 소통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여야간의 타협문화에 대해서 한국은 32.3점이 나온 반면. 독일은 2배에 가까운 62.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소설가 김훈씨가 멋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우리 시대 언어의 모습이 돌처럼 굳어지고 완강해져서 무기를 닮아가고 있다. 그것은 지배적인 언론과 담론들이 당파성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정의와 신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사실이 아니라 내편이냐 아니냐 나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로 인식한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만 한다는 겁니다.

비단 방송토론만이 아니고요 우리사회의 양쪽 집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언론으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사회적으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까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사회 소통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 원인은 토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연습을 해본적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우리 사회교육이 토론식 교육이 아니었고 –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

토론문화가 성숙한 나라들은 이런거 토론할게 별게 없는 나라인겁니다.
독일 어떻습니까. 봉건주의를 극복하는 시민혁명의 과정을 수백년 넘게 겪었고요 다시 사회주의가 시작되고 나치독재가 있고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가고요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정치적으로 제도화되고 지방자치로 정착되고 또 이런 과정이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면서 풀어가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사회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한 것 자체가 토론을 어렵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9년생이신데, 그분의 의식세계를 보면 조선전통사회의 가치관 그위에 일제 광복이 되었지만 우리 힘으로 일제청산을 못하고, 다시 근대화, 군사독재, 군사독재 무너졌지만 또 뭐가 얹히고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한 문장에 이조사회가치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주화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청산과 극복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 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 정당내에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과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세대 건너면 항일투사와 일제관료의 아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 가슴속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미해결과제가 많다는건데요, 그 과제 하나 하나마다 엄청난 역사성이 있습니다.

토론문화가 성숙한 나라들은 이런거 토론할게 별게 없는 나라인겁니다. 독일 어떻습니까. 봉건주의를 극복하는 시민혁명의 과정을 수백년 넘게 겪었고요 다시 사회주의가 시작되고 나치독재가 있고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가고요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정치적으로 제도화되고 지방자치로 정착되고 또 이런 과정이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피가 끓는 분들이 많은건 데요, 이렇게 피가 끓으면 토론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고도압축성장으로 인한 중첩적 사회 구조가 토론을 어렵게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4. 한국의 보수와 진보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계사적 흐름에서 비추어 볼 때 다른 나라의 보수와 진보에 비해서요.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이 냉전적 구조에서 미국중심체제에 편입되고, 군사독재를 겪고, 반독재민주화과정을 거치고 이런건데요, 남부유럽,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 식민지경험을 추가하면 중남미국가와 아시아국가들만 남겠네요.

이렇게 반독재민주화 과정까지 거친 국가들을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대부분 유럽나라의 식민지경험을 겪어서 유럽형 정치의 영향으로 유럽형 다당제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경험이 있고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보정치의 분화현상이 그 어떤 나라보다 뒤쳐집니다. 87년 이후 민중당의 실험 등이 있었지만 실제 정치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럽형 정치질서가 아니라 미국형 정치질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미 · 일 · 한국이 세 나라 만이 보수양당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경험, 분단경험 그래서 진보를 말하면 죽음이었던 경험. 그래서 진보적 실험의 토대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진보는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정당들 예를 들면 꼬마민주당 통추 이런 정당들의 실험이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198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를 볼까요. 1노 3김 중에서 김종필은 빼고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중에서 한번 선택해보십시오. 그래프 가로가 연령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그래프 세로가 지지도입니다. 1번 나이든 사람일 수록 지지도가 높다, 2번 연령별로 지지도가 고르다, 3번, 젊은 사람일수록 지지도가 높다. 각각 누구였을까요? △ 1번 나이든 사람일수록 지지도 높다 누구일까요? 네, 노태우, 와이에스 △ 2번 연령에 관계없이 지지도가 고르다 와이에스, 노태우 △ 3번 젊은 사람일수록 지지도가 높다 디제이 네, 한분 와이에스

제가 88년이후에 이 질문을 던져보면 정답을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보적인 분들일수록 못 맞춥니다. 3번 디제이는 진보적이다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찍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만큼 진보의 토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겁니다. 1번 노태우지요. 2번이 바로 디제이입니다. 호남사람들만 찍은 거에요. 3번이 바로 와이에스입니다. 양김의 단일화 실패이후에 비호남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이에스를 찍은 겁니다.

진보진영은 자신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과 절충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상대방이 맘에 안 들어도 공존하는 자세, 중간의 40%층 중에서 1%라도 어떻게 내편으로
끌어들이느냐를 고민하는 전략과 전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보의 토양자체가 약해서, 진보는 죽음이라는 박해받은 경험 때문에 진보적인 분들 마음속에 극단주의, 사생결단적 운동노선이 있어요. 편안한 진보는 잘 못합니다.

2002년 월드컵때 거리에서 중고생들이 신나게 태극기 흔들고 애국가 노래 부르고 그랬을 때 제가 무척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슬픔의 정서에요. 태극기 흔들다가 잡혀가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애국가 부를 때 슬픈 정서로 부르고요. 그 때 제가 비로소 정상적인 국민들이 나타났다 이런 칼럼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념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오류가 노정되고 있던 노선을 늦게 배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사적 흐름으로는 80년대 이후 보수는 신보수, 진보는 신진보 그래서 수렴해가고 절충과 타협을 해가고 이런 경향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진보는 타협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하나 서구의 경우 진보의 특징은 리버럴하다는 겁니다. 도덕적 엄숙주의를 공격하면서 등장하고 성적으로 관대하고, 히피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이죠. 보수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하면 경기 일으시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특징은 도덕성입니다. 보수란게 전통과 명예를 지켜나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이런 것이 본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수란 것이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부를 축적하고 자본주의가 몇 대에 걸쳐서 융성하면서 등장한거 거든요. 과거처럼 신분제, 독재로 돌아가는 것과 싸운겁니다. 그래서 개개인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과 질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사회 진보는 어떻습니까. 도적적으로 엄숙해요. 반대로 우리 사회 보수는 어떻습니까. 고도압축성장과정에서 청산과 극복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와 독점 밖에 모릅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나치를 얼마나 철저하게 청산했어요. 프랑스 비씨정부를 보십시오. 몇 년간 독일괴뢰정부가 세워졌었는데 그후에 얼마나 가혹하게 청산을 했어요

우리 나라는 조선 때, 권력을 잡고 잘 살던 사람들이 일제때도 그렇고 해방후에도 그렇고 독재치하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상대방의 그런 점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진보는 보수의 부패와 독점에 대해서, 보수는 진보의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해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에 대해서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진보진영은 자신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과 절충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상대방이 맘에 안 들어도 공존하는 자세, 중간의 40%층 중에서 1%라도 어떻게 내편으로 끌어들이느냐를 고민하는 전략과 전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종래의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뭉치게 하는 적대적 공존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적 대립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의 단초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쪽 진영의 행태 보면서 몸서리 쳐지는 것이 참기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방송토론 오래하면 배운게 참는 거 하나 제대로 배웠습니다. (웃음)

얼마 전, 신문 1면 기사를 보니까 전여옥 의원이 폭행당한 기사하고 학사모라는 단체에서 전교조 교사에게 담임 맡기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기사가 동시에 실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 진보와 모습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여옥 의원같은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없애지 않는 한 전교조 교사에게 담임 못 맡기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비로소 소통의 단초가 아닌가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송호창 어떠십니까.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꿀 여유들이 생기셨나요. 질문들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 1 : 방송토론을 통해서 여론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진행자로서 느끼신 바를 말해주십시오. 라디오 토론도 진행하셨는데, 티비토론과 라디오토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제가 노동운동, 학술운동, 민중당활동도 참여하고, 언론도 만들었다가,
방송도 했다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자는 회색분자라고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저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당한 회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 먼저 티비토론과 라디오토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비토론과 라디오토론은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라디오 토론이 더 편하다는 거지요. 티비토론은 카메라가 있어서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라디오토론이 더 진솔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송토론을 통한 여론 변화와 관련 공론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 100명 반대 100명의 청중을 뽑아서 전문가들이 토론한 것 보여주고 찬성에서 반대로 변화 한 숫자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화한 숫자를 조사하는 거지요. 각 이슈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분명히 변화효과는 발견됩니다. 그 정도는 측정이 곤란하지만요. 사회과학 논문도 없고요. 아 이런건 있습니다. 선거티비토론을 보고 지지후보를 얼마나 바꿨나. 미국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는데 티비토론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티비토론후 언론평가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질문 2: 티비토론을 오랫동안 진행하셨는데 우리 토론문화에 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다만 차분한 쟁점때는 잘들 하시는데 극심한 대치현상 벌어지는 이슈의 경우는 다들 뒤로 돌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질문 3 :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티비토론을 자주 봤는데 언제부터인가 잘 못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상대방 패널의 이야기, 행태를 잘 못 참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진보가 보수에게 다가가는 면이 필요하다 설득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들었는데요 이른바 범좌파 진영의 입장에서 유럽의 사례처럼 좌 우 진영의 폭넓은 연합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 오랫동안 되풀이해왔던 논쟁입니다. 1987년 비판적 지지를 할 것인지 독자적 후보를 내세운 것인부터 계속된 논쟁이지요. 현재 국면에서는 진보자체의 연합을 강조할 것인지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할 것인지가 되겠지요. 아직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좌파의 특징이 자기네에서 더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정치연합등 전술전략에서 다양한 정치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질문 4 : 손석희씨가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추궁한다면 정관용 교수님은 한마디로 유연함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세대, 연배에서는 그런 유연함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유연함을 갖추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것이신지요?

답변 : 우선 유연하다고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선 성격이 별로 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와이에스정부초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양쪽 집단과의 접촉이 넓었던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노동운동, 학술운동, 민중당활동도 참여하고, 언론도 만들었다가, 방송도 했다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자는 회색분자라고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저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당한 회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양쪽을 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저보고 회색이라고 하는 표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웃음)

송호창 오늘 다룬 소통의 문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기 위한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제대로 된 소통, 성숙된 한단계 위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변 3월 월례회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정리 _**좌세준**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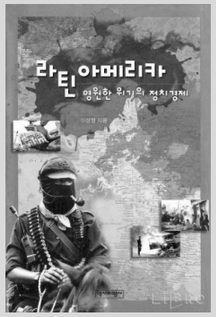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이성형, 역사비평사(2002)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에릭허쉬버그 외, 모티브북(2008)

일시 : 2009년 3월 17일(화) 오후 7시
참석자(가나다순) : 강신하, 김선수, 민경한, 좌세준, 박성민(인턴), 이겨라(인턴)

좌세준 오늘 3월 첫 공부모임입니다. 우리 공부모임이 이제 꼭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제질서에 관한 책 중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책을 2권 골랐는데, 이성형씨가 쓴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라는 책이 주 텍스트고, 작년에 나온 번역서입니다만,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에릭허쉬버그 외) 라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발제는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실상

강신하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모두 일정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후에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것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자유무역 정책으로 나갔는데, 193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는 수입대체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수입대체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채에 의존한 발전이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멕시코를 시작으로 한 외환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권위주의 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했고, 라틴 아메리카 각 나라의 특징이 최근까지도 역사적으로 소수의 과두제 지배계급이 통치세력이 되고 선거제도는 단지 정기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기능에 한정되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집권한 세력은 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도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자유주의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외채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과 상류층,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이후의 실상은 실질임금 하락, 빈부격차 증대 등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페론주의와 아르헨티나

강신하 먼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땅도 넓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르헨티나는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경제력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다만 이 시기까지 지주 과두제 계급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이러한 과두제 계급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페론 정부에 대한 성격 규정 문제입니다. 이성형씨의 책에서는 페론 정부의 가장 나쁜 유산 중 하나로 "매개 부재의 정치" 즉, 정당제도 등을 불신하고 항상 페론 자신이 직접 대중에게 호소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 군정을 거치고 알폰신 민정을 거친 후 1989년부터 메넴이 집권하게 되지요. 메넴 정부는 선진국으로부터 경제 개혁 정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극찬을 받기도 합니다만, 극단적인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페소와 달러를 1:1로 묶는 태환법을 실시한 결과, 내외 금융자본과 수입업자, 달러 예금자들은 이득을 보지만 수출업자들은 페소화 고평가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고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우리 보수 언론이 보여 준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저자 이성형씨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성노조가 문제라거나 '포퓰리즘' 적 정책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하여

저자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역사적으로 과두제 세력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고질적 폐해가 있었고, 메넴 정부 시절 무분별한 개방과 민영화 정책이 최근 아르헨티나 사태를 낳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실례로 전화사업 민영화로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의 전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는 아르헨티나 군정 시절 실종된 자녀들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5월 광장 어머니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터라 대단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멕시코, 페루의 몰락, '절반의 성공' 칠레

강신하 다음으로 멕시코는 1988년 집권한 살리나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공사례로 칭송을 받았고, 마침내 1993년 11월 신자유주의 개혁의 완성판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기에 이릅니다. 살리나스 대통령의 가족들은 1994년 신년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바로 1994년 새해 첫 날 치아파스주에서 인디오 게릴라 반군의 봉기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중에 마르코스 부사령관의 상징이 된 검은색 스키 마스크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후 마르코스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2001년 폭스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평화 대행진으로 멕시코시티에 입성하여 연설을 하기도 하고 폭스 정권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경우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결과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게 되었고 실질임금 하락 사태, 사회 불안으로 유괴 산업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의 경우는 후지모리가 집권할 당시의 공약과는 달리 집권 후 미국, 일본 등을 방문하고 난 후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후지모리는 백인 주류계층이 아니고 아시아계로 비주류였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페루는 비교우위에 있는 1차 산업에 치중한 수출에 주력하였는데, 수출상품의 해외시장 가격이 급등락할 때마다 경제가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후지모리는 무리한 개헌 시도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 몰락에 이르게 됩니다.

칠레는 남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와는 달리 칠레에서는 지주 과두제 세력이 1960년대와 아옌데 시절의 개혁을 거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고,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형태의 경제정책이 나름대로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칠레의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칠레 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1차 산업 위주의 수출 모델은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베스 집권 이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석유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가 확충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게 된 성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현재 진행형 혁명

강신하 다음으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인데요, 차베스 정권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시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차베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쿠데타가 3일 만에 막을 내리는 사태가 있은 후 차베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베스 집권 이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석유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가 확충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게 된 성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차베스 정권이 실시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등에 대하여는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만합니다.

이번에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결과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대응할만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세계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와 같은 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라틴아메리카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성형씨는 이 책에서 본인이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 지역 연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지역연구자도 없고 연구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인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좌세준 네. 감사합니다. 두 권의 책의 내용을 종합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발제 말미에 언급해주신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하고 있는 정권들을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라는 책에서는 '새로운 좌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 엘살바도르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좌파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고, 볼리비아 원주민 출신 대통령 모랄레스는 개헌을

통해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원주민 소농들에게 분배하는 획기적 조치가 있었다는 소식도 보입니다. 두 권의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풀어놓아 보았으면 합니다.

강신하 이성형씨의 책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룰라 정부 집권 후의 정책들을 볼 때 좌파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김선수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이후 미국과의 관계, 신자유주의 등의 조류에 직면하면서 조금은 변질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이 책에서는 좌파 정부로 분류하고 있지요. 종전의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룰라 정부는 여전히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강신하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의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페론 정권에서는 나름대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확대된 면이 있는데, 지금도 페론파가 아르헨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좌세준 페론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10가지 정도의 시각으로 분류된다고도 하는데요. 파시즘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민중적 민족주의'로 보는 시각, 맑스주의 입장에서는 보나파르티즘으로 봐서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도 논쟁은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해요. 페론은 마돈나가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1946년부터 55년까지 2차에 걸쳐 집권하고 망명했다가 1973년에 다시 한 번 집권을 하잖아요. 1974년에 페론이 사망하면서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 정권을 담당하다가 군정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강 변호사님이 발제 때도 언급하셨지만 정당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처럼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일정 부분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점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신하 이 책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장기집권이나 비민주적인 면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 집권의 문제는 최근 차베스의 임기 연장 헌법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1946년부터 55년까지 2차에 걸쳐 집권하고 망명했다가 1973년에 다시 한 번 집권을 하잖아요.
1974년에 페론이 사망하면서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 정권을 담당하다가 군정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선수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영향력, 군사적으로 수시로 각국 정치에 개입한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1인 독재다라고 일면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민경한 장기 집권의 문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인 독재는 다양한 수사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적인 면에서는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김선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남아메리카의 경우 한 두 나라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좌파 정부'라고 불리는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나라별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좌세준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라는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라틴아메리타에서는 "좌파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파'라 불리는 정권이 집권하지만 집권 후 실시되는 정책들은 좌파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꼭 라틴아메리카적 상황만 그런 건지는 의문입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서는 차베스 정권만큼은 '진정한 좌파'인 듯 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통 좌파라 하기에는 규정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성공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강신하 남미 국가 중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차베스 집권 후 베네수엘라는 최근 블록을 형성해서 미국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수 남미 국가에서는 그동안 오래 지속되어 온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일정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좌세준 기존의 관계처럼 미국과 1 대 1 대응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쿠바, 우루과이가 공동으로 투자한 '텔레수르' 라는 방송이 생기기도 했지요. 작년 촛불 집회 때 '텔레수르' 가 우리 촛불 집회를 중계하고 보도하는 것을 본 기억도 납니다.

강신하 멕시코의 경우는 비센테 폭스 대통령 집권 후에 치아파스 반군 마르코스와도 협상을 하기도 한다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좌세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폭스 집권 후 평화 대장정을 하고 나서 협상과 원주민을 위한 입법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마르코스에 관한 책을 따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평화 대장정을 마치고 했다는 마르코스의 연설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성형씨의 책 157쪽에 소개되고 있는데 잠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멕시코여. 우리는 겸손과 존경의 염을 가지고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우리는 대지의 빛깔입니다. 제발 우리의 깃발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채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경한 저는 라틴아메리카와 우리나라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주로 1차 산업에 치중한 면이 있지요. 지하자원이나 농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을 위주로 한 경제인 반면, 한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주력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높은 교육열이 바탕이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교육 분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라틴아메리카는 원주민 문제 등도 있어서 차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되는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좌세준 예. 그렇습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제도 정치 영역에서 배제된 원주민이나 소수 극빈층에 의한 민중운동 부분이 강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듯합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무토지 농민운동 등이 좋은 사례인데,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 같은 것도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세계적 이슈가 된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멕시코여. 우리는 겸손과 존경의 염을 가지고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우리는 대지의 빛깔입니다. 제발 우리의 깃발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채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성민(인턴) 저는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과거이면서 미래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경우,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페론 정부가 이후 아르헨티나에 미친 영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호주에 있을 때 남미에서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남미 친구들에게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나라도 기회의 땅이라는 것인데, 남미 국가 젊은이들의 경우 자기 나라보다 외국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찾고, 가능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겨라(인턴)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수언론이 말 바꾸기 식의 보도를 하고, 대단히 왜곡된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제대로 하는 학자들이나 자료가 극히 부족한 것은 잘못된 보도를 낳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경한 박성민 인턴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발전과정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나갔다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세준 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함께 느끼게 된 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운동 등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누에바 깐시온' 이라는 남미 노래운동에서 등장한 노래들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 문제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나중에 한 번 함께 읽어볼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모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동정

돌아온 탕아?

변호사에서 영화제작자로,
영화제작자에서 변호사로

글 _**조광희** 회원

영화사 일을 하게 되기까지

마흔 살 무렵인 2005년경 안식년을 받아 미국으로 갔다. 그 나이에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을 치는 식으로 공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법률공부를 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Empire State Building) 54층에 자리를 잡은 조그만 로펌에 적을 두고서,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도 다니고 읽지 못했던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우여곡절 끝에 뉴욕대 랭귀지스쿨에서 한 학기 동안 영어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영어를 그 정도 밖에 못하냐는 핀잔을 들을까봐 쉬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영어공부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 생활에 비하면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주어진 시간은 다른 의미에서 생산적이었다.

맨해튼이 바라보이는 뉴저지의 허드슨강변을 오리떼와 함께 한없이 걸으면서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았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 딴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얻은 결론 중 하나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것이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늘 깨어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매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는 다짐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늘 그랬듯이 영화관련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다만 좀 더 열정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던 중 수년 간 고문변호사를 맡아 왔던 영화사 '봄'의 제의를 받고 변호사를 휴업한 채 본격적으로 영화제작에 나섰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변호사만 하면서 살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래저래 오랫동안 영화계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 동네가 아주 낯설지는 않아서 가능한 선택이었다.

독특한 매력, 영화사 일

영화사 일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점이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변호사 일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영화사 일은 이것이 문제라고 발언하거나 이것이 흥미롭지 않느냐고 사람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변호사 업무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문제에 가깝다면 영화사 업무는 아무것도 없는데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내부 기획회의에서 어떤 콘셉트의 영화가 재미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수의 공감을 얻으면, 회사 내 누군가에게 이야기의 얼개를 만들어 보라고 맡기거나 작가를 고용해 집필하게 한다. 또는 감독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감독이 갑자기 한 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이야기의 줄거리를 읊는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시큰둥하다 싶으면 없던 이야기로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완성된 시나리오가 되고, 다시 한 도 끝도 없이 고쳐서 맘에 든다 싶으면 투자자에게 보낸다. 물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적당한 단계에서 감독이 정해지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한다.

결국 말 한마디나 순간의 착상이 실체화되어 마침내 수 십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수많은 스텝들이 구성되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일이라면 일이고, 놀이라면 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묘한 과정이다. 그래서 일과 놀이가 결합된 과정에 매혹된 이들은 아무런 댓가없이, 심지어는 희망도 없이 이 작업에 인생을 걸고 매달린다.

별 볼일 없는 영화제작자(?)

나는 영화에 매혹된 것 까지는 아니었지만 깊은 흥미를 가지고 그 작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혹은 운이 나빠서인지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2006년 하반기부터 한국 영화계의 투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2007년에는 산업 전체에 위기의 조짐이 완연했다.

투자할 영화가 없냐고 기웃거리던 투자자들이 점점 드물어지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저기서 영화가 엎어졌다(영화제작이 중도에 중단되었을 때 영화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도 수십 명의 스텝까지 구성했다가 투자가 무산되어 촬영 직전에 팀을 해산하고 제작을 미루는 상황에 처해야 했다. 스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속이 상해서 소송을 연속하여 10번쯤 패소한 기분이었다.

지난 3년간 투자자에게 투자를 거절당한 횟수는 그 이전 평생 무언가를 거절당한 횟수(여성에게 거절당한 경우 포함)보다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잠도 못자겠더니 나중에는 세상 일이 다 그러려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의 후광 뒤에서 별로 거절당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만으로 남에게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장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스스로는 아무리 좋은 기획과 시나리오라고 생각해도 투자를 할 사람이 없으니 영화를 만들 방법이 없었다. 돈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과정에서 어찌 어찌 제작한 영화가 홍상수 감독의 두 편의 영화(〈해변의 여인〉, 〈밤과 낮〉)와 전도연씨, 하정우씨가 출연하고 이윤기 감독이 연출한 〈멋진 하루〉였다. 세 영화 모두 여러 국제영화제에도 초대받고 평론가들에게는 상당한 호평을 받았지만 예상한대로 흥행은 보잘 것 없었다. 그러다 보니 3년이 금방 흘러갔다. 아무튼 나는 영화제작자로서는 별 볼일 없었던 셈이다.

부가판권과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

한편, 어느 시점부터 영화를 제작하는 일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된 일은 한국영화 제작자들의 단체인 영화제작가협회의 업무였다. 협회에서는 내가 변호사라는 점에 착안해 협회의 이사격인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각종 법률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다. 그 일은 처음에는 무심히 시작되었으나 점점 한국영화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발전했다.

내가 몸소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영화 위기의 실체는 단순하다면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다. 수년 간 산업 내에서 다양한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흔히 '부가판권'이라고 말하는 '극장 다음 단계 유통시장'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는 돈을 지불하고 보지만, 그 외에는 '보지 않거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본다'는 뜻이다. 그 핵심에는 저작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이루어지는 불법 웹하드 서비스가 있었다. 웹하드 업체의 사이트에 가면

거의 모든 영화를 거의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영화산업의 수익성은 평균 -30%에서 -40%가 됐다. 한 마디로 영화산업은 투자하면 손해를 보는 산업이 되었다. 내가 협회에 관여하기 시작할 무렵 영화산업의 구성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적 대응을 시작했다.

당시 주요 투자배급사들은 민사소송만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나와 협회 부회장인 '나우필름' 이준동 대표가 강력히 주장한 끝에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했으며, 그 성과는 곧 나타났다.

주요 웹하드 업체의 대표들과 헤비 업로더들이 전격적으로 구속됐던 것이다. (최근의 1심 판결에서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결과 상습적인 저작권침해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어 지난 한 해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본래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불가피하게 소송과 이후의 협상과정에 깊이 간여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초에 주요 제작자들과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가 △과거보상 △현재 침해의 중단 △장래의 저작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협력 기구의 설립에 합의하면서 큰 물줄기가 잡혔다.

장차 그것이 얼마나 잘 마무리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보람을 느꼈다.

이미 〈추격자〉, 〈미인도〉 같은 영화의 합법 다운로드 수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꽃보다 남자〉같은 드라마의 합법다운로드 수익은 관계자들조차 놀랄 정도여서, 영상물의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의 합법화는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섰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부가판권 시장이 인터넷시대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그것이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로 이어져 다시 한 번 한국 영화가 만개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마지막 희망 '민변'으로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몸담은 영화사는 다른 대부분의 영화사와 마찬가지로 긴 겨울을 겪으면서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선택한 방법이 내가 회사의 대표로 남아서 비상근으로 관리업무를 계속하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품기획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다. 즉, 영화사에서는 비상근대표로 근무하고 다시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문제로 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기도 했고,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여 변호사로서 할 일이 많을 거라는 예감도 작용했다.

아무튼 예술 영화 몇 편 만들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되니 머쓱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변호사로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한 것은 두고두고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복귀에 즈음하여 평소 좋아하던 윤기원 변호사님, 존경하는 강금실 변호사님과 상의하다가 그 분들이 계시는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 일을 재개하게 되었다. 의욕적이고 공동체적인 법무법인 원의 분위기는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때가 언제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화사에 근무하던 지난 몇 년간 형식적인 회비만을 내고 방관했던 민변에서 다시 작은 힘이나마 보탤 기회가 있다면 또한 큰 기쁨일 것이다. 언제 보아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능력과 판단력을 지닌 백승헌 회장님의 영도(?)아래 기라성 같은 후배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민변,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 된 민변에서 변변치 않은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좀 더 나은 회원이 되겠노라고 마음 깊이 다짐해본다.

회원동정

민변 새내기, 인사드립니다

글 _조현주 회원

Ⅰ. 들어가며

저는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민변에 일찍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런 글을 쓰자니 참으로 민망하지만 그냥 새내기 변호사로서 민변 회원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민변에 대한 기대 내지 소망을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글을 써 보았습니다.

Ⅱ. 민변에 가입하게 된 동기

사법연수원 4학기 시험이 끝난 후에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는 싶은데 그 길이 많지는 않고 또 그 길을 걷을 결의가 되는지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민변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민변이 어떤 곳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상근변호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변호사시보를 공감에서 하면서 민변회의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상근변호사님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어서 민변이라는 공간에 대해 낯설음이 적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민변이라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된 후에 민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 하는 변호사는 못 되어도 좋은 일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Ⅲ. 민변에 대한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민변의 이름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에서 저도 예전에는 독재정권을 떠올렸고 그래서 민변은 과거의 단체와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87년 이후 적어도 92년에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의 광우병 촛불집회 등으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젊은 층에게도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민변이 과거의 조직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변의 과제 중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도 변호사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변이 작년에 상근변호사님들을 뽑고 인턴쉽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그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Ⅳ. 민변에서의 활동 계획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변에서의 활동 계획은 일단 회비를 잘 내고 월례회, 여성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위원회에서 상담이나 서면작성 등의 일을 맡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Ⅴ. 나가며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의미를 갖는 것인데 너무 많은 말을 한 듯하여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말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변회원님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앞으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변 2기 인턴 오티로 가는길

민변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고 눈물을 훔쳤던, 실천하는 지식인이길 희망한 '나'는 민변을 선호하는 사람 중 한명이었다. 운이 좋았던 탓인지, 또는 민변 변호사님들의 안목이 뛰어(?)났던 덕분인지 나는 민변의 2기 인턴이 됐다. 여담으로 합격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좋아했던지, 당시 합격소식을 전해주셨던 1기 인턴 공 아무개 군은 리스트 옆에 '너무 좋아함'이라고 써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설레는 가슴을 안고 지난 2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오티 장소였던 강화 막달레나공동체로 향했다. 아무래도 '강화'라고 하니, 바다가 보일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바다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랬기에 더욱 특별했던 경험은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변 소개와 1기 인턴의 야심작 '인권 프로그램'

'유익한 오티'가 되길 바라신 변호사님과 간사님, 1기 인턴들의 배려로 간단한 킬 딴 하 가 담론이자 전유물'이라고 느껴지는, 어느 한편으로는 '행동'보다 담론화가 우선시된 현실 때문이라고 본다. '행동'을 내세우는 민변이기에 실천하는 지식인이라는 수식어가 무척 잘 어울리게 느껴진다.

인권프로그램 중 인권 선물하기와 인권나무 만들기도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인권 선물하기는 다양한 권리들 중 한 가지 권리를 제시받고 해당 권리에 대한 글을 쓰는 자리였다. 나는 '도망가는 것도 권리다'라는 제시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난민에 대한 글을 썼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에 관련해서는 보수진영에서 인권을 도구화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이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응이 '적절'한가?) 인턴들의 너무나 다양하고 멋진 생각들에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자리였다.

팀별? 딸랑 두명~ 최강 출판팀 1기 인턴의 인수인계

팀별모임시간, 인원이 수두룩한 다른 팀들은 옹기종기 앉아서 뭔가를 하는 듯 보여 순간 부러웠다. 그렇지만 공두현 1기 인턴이 혼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인수인계를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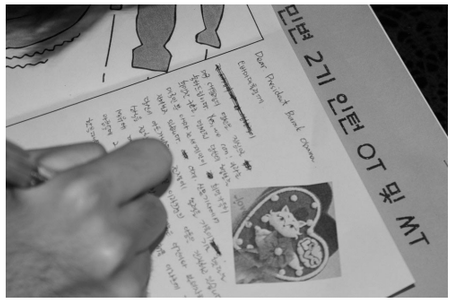

회의일정 조정이나 정기구독자 관리부터 정기간행물 등록, 통신판매업등록 등,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해오셨고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내게 넘겨주시는 상황. (허걱) 부담이 잔뜩이었다. 그래도 학보사와 한 일간지 회사에서의 경험덕분인지 일들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친절한 공두현 인턴의 '알찬' 설명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인수인계, 역시 출판팀이 '좀 짱인듯' 하다.

주제가 있는 뒷풀이 with 돼지고기와 강화인삼막걸리, 그리고 '민변'

주제가 있는 뒷풀이 시간, 근처 하나로마트에서 입수해 오셨다는 싱싱한 돼지고기와 강화인삼 막걸리가 함께했다. 이겨라 1기 인턴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2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마치 시계를 보고 하는 것처럼 2분 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그런데 시간에 너무 신경 쓰다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들은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를 나누다 보니, 수시 인턴까지 스물 두 명의 인턴들 가운데 '빠른 87년생'인 내가 제일 막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덕분에 부담 없이 인턴 언니오빠들과 변호사님, 간사님들의 철철 넘치는 사랑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 자리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민변의 따뜻함'이 아닐까 싶다. 멀리서만 지켜보았던 민주사회를 생각하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한 인간으로서의 변호사님, 그리고 강한 자기주장을 펼칠 줄 알면서도 배려심이 남다른 인턴들. 민변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굿나잇'이었다.

'88만원 세대'가 민변을 선택한 이유

글 _**박성민** 인턴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

성립이 안 될 법한 일 같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누구나 '민물에 바닷고기가 빠져서? 바닷물에 민물고기가 빠져서?' 라고 다시 묻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물에서도 빠져죽을 수 있다' 는 것이 옳은 대답이다. 다시 말해, 물고기가 물속의 산소를 섭취하지 못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노라 이야기 하지만, 물고기도 결국 물속의 산소를 호흡하고 산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일 뿐이다. 인간도 산소가 지천에 깔린 물 위 세상에서 숨 막히며, 또 어이없어 죽어가는데,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그다지 신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사람도 숨을 쉬다 죽을 수 있고, 물고기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 라는 그 본질이 같고, 결핍이라는 그 이유가 또 다시 같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물속에서 죽어가는 물고기와 다름이 없음을 느낀다.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갖가지 도구들을 발명하고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고, 또 그 수단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들의 결핍을 집단으로 체험하고 있다. 주거와 생존의 공간을 지키다가 화염에 생을 마감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범법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러한 결핍을 강요하는지 생각해 보곤 한다. 특히 '88만원 세대론' 안에 존재하는 나와 같은 20대에게, 풍요 속의 성장이라는 과거 뒤에 존재하는 현재의 결핍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를 예상하게 만든다. 더구나 20대의 결핍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식의 결핍에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다' 는 대답은 가장 쉬운 변명이 된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만든 결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내가 누군가의 결과로 살아간다는 당연한 현상만을 인지할 뿐, 무엇을 향한 과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보다 능동적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20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나의 안위와 입신양명,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생존' 이 삶의 키워드가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결국 보다 공시적, 통시적으로 나를 놓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 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다.

'병적인 행복' VS '건강하고 정상적인 불행'

민변 인턴으로 일하게 된 첫 날. 내게 처음으로 부여된 업무는 작년 광우병 파동으로 발생한 촛불시위 참석했다 연행되어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이들의 상담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그 대가를 치러야하는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 가득한 목소리가 불안정한 호흡을 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직은 그 모든 과정이 서투르고 조심스럽다. 혹시 내가 재판 청구 기한이라도 잘못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필요한 서류를 깜빡하는 것은 아닌지, 짧은 통화 중에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다. 각종 회의와 토론회 참석, 몇 가지 행사 진행업무 등을 제외하면 아직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고 들으며 배우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변의 존재 이유, 민변이 꿈꾸는 세상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병적인 행복' 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 보단, '건강하고 정상적인 불행' 을 함께 극복하고 즐기는 것. 민변과의 첫 만남에서 지금까지, 지난 한달 여의 시간동안 내가 찾은 민변의 존재 이유다. 세상을 알아갈수록, 또 매 선택의 순간마다,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행복하고 싶다' 는 우리의 소망. 하지만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민변' 은 그런 고민의 끝에서 무자비한 국가권력의 횡포, 소수의 행복만을 지켜주는 불합리적인 법과 제도에 맞서, 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꿈의 공작소' 가 아닐까?

일주일, 그리고 6개월

'역사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한 번도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들은 다만 시간을 지체시켰을 뿐이다' 라는 하이에크의 말을 빌려본다. 민변은 지체되고 있는(혹은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화의 시간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한 번도 내놓은 적 없는 대안을 찾기 위해 민변의 시간은 지난 20년을 힘차게 달려왔다' 라고.

작은 힘일지언정, 그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민변의 문을 두드렸다. 함께 2기 인턴을 시작한 동기들 역시 각자가 목표로 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민변의 이름을 아로새기는 중일 것이다. 또 누군가에겐 민변이 곧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일런지도 모른다.

처음 민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짐했던 것이 있다. 그동안의 삶이 '민주사회' 의 결과를 사는 삶이였다면, 최소한 민변에서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민주사회' 의 과정에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 하지만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만 익숙했던 지라 후대의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으로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기만 하다. 그만큼 오랜 시간 체화된 수동적인 삶의 방식, 그 삶의 이기적인 욕망을 지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민변과 처음 만나던 날, 인턴들이 가지는 민변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던 어느 변호사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분명한 것은, 6개월 뒤엔 우리 모두의 그 기대가 100% 충만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성명 및 논평

아래 내용 전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 평 악법 철회, 지금부터 시작이다 / 2009. 1. 7.

논 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 2009. 1. 9.

의견서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국회 전달 / 2009. 1. 14.

논 평 위헌적인 제3자 개입금지 도입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 2009. 1. 29.

용산 진상조사단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 2009. 1. 30.

성 명 '촛불코드배정'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 2009. 2. 24.

의견서 한나라당 2월핵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 2009. 2. 25.

성 명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 3. 3.

성 명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 3. 5.

성 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 3. 13.

성 명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3. 16.

성 명 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 3. 16.

성 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3. 19.

성 명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 3. 25.

정기구독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시사쟁점에 대한 민변의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
민변의 활동,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ttp://www.minbyun.org 에서
구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 1년 6회 발행 30,000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화 문의 : 02-522-7284
메일 문의 : info@minbyun.org